14. 우리들의 미래

① 우리 사회에는 우리의 삶과 인권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들을 찾아서 다음의 도표 안에 간단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인권을 위협하는 문제들	나에게 끼치는 영향	우리 나라에 끼치는 영향	세계에 끼치는 영향
예) 빈부격차가 심해진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다	사람 사이에 갈등이 심해진다	잘사는 나라들의 횡포가 심해진다

② 20년 후면 여러분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이가 된다. 앞의 도표에서 나타난 문제들이 계속 진행된다면 '20년 후의 나의 삶' 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예상되는 결과를 생각해서 동그라미 속에 채워 넣는다.

③ 각자가 예상한 '20년 후의 나의 삶' 을 모아 조별로 합동 그림을 그린다. 그림의 주제는 현재의 문제들이 지속될 때 예상되는 미래이다.

④ 완성된 그림을 이용하여 조가 토론한 내용을 발표한다.

⑤ 그럼 우리들이 바라는 미래는 어떤 것일까? 이번에는 우리들이 바라는 미래를 표현해 본다.

⑥ 다음 그림의 빈칸을 우리들이 바라는 미래의 모습으로 채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인권 문제가 당장 나의 삶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20년 후에 자시 삶에 미치는 결과를 예상해 봄으로써 인권 문제가 나의 현재와 미래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15. 대안의 사다리

① 우리가 학교나 가정에서 직접 겪고 있는 문제 중에 꼭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각 조별로 토론하여 하나의 문제를 정한다.

② '문제' 를 정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한다.

③ 조원들이 내놓은 의견을 놓고 생각해 본다. 제시된 대안 중에서 '단기적' 이고 '즉각적' 인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해결 방법은 사다리의 아래쪽에, '장기적' 이며 즉각적인 결과를 보기는 어렵지만 '근본적' 인 해결 방법이라 생각되는 것들은 사다리의 위쪽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대안의 사다리' 를 채워간다.

아주 근본적인 해결 방식만 생각하면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예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목표와 당장 실천 가능한 목표를 체계적으로 세워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목표로부터 실천 가능한 방법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사다리' 를 채우기 위해 토론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목표와 방법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16. 무엇을 할 수 있을까

① 우리는 불평등에 관해 많이 알고 있다. 빈곤, 실업, 차별 등에 대해 매일 듣고 있다. 우리는 뭔가 '변화' 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② 알맞은 수로 조를 만든다.

③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어떤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답을 내놓았다.

제3세계의 아동을 후원하는 모금을 한다.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업을 찾아낸다. 그런 기업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그 기업의 상품을 불매한다.

빈민, 노점상, 철거민, 실업자 등을 지지하는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자기 생활을 최대한 간소화한다. 즉, 소비를 최소화한다. 그렇게 해서 저축한 돈 을 본인이 지지하는 활동의 기금으로 낸다.

학교의 동아리나 지역의 단체, 교회, 사찰 등의 활동에 인권에 관한 어떤 활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설득한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인간은 쉽게 바뀔 수 없는 존재이므로 지금의 불평등은 감수해야 한다.

세계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은 각 사람의 심성을 바로 잡는 것이다. 도덕재무장운동 같은 게 제일 필요하다.

인권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아내려 애쓴다. 찾아낸 문제에 대해 다른 많은 사람 들에게 이야기하고 설득할 줄 안다.

공부하고 기술 익히기에도 바쁘다. 힘이 있어야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법이다. 일단 열심히 공부한다.

창조력이 필요하다. 서로서로 머리를 맞대면 좋은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 다.

④ 앞에 제시된 10가지 답에 대해 조별 토론을 한다. 각 조는 보기의 10가지 방법 중에서 제일 지지하는 방법 3가지, 맘에 들지 않는 방법 3가지를 각각 고른다.

⑤ 각 조는 자기 조가 고른 방법과 그걸 선택한 이유에 대해 전체 앞에서 발표한다.

⑥ 조별 발표를 들은 후 다시 조별로 흩어진다. 불평등을 줄이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본다. 토론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⑦ 전체가 다시 모여 조별 토론 내용을 발표한다.

인권 문제에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성격의 사건과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인권 문제를 대하는 다양한 태도와 실천 방법에 대해 토론해 봄으로써 이런 무력감을 극복하고 실제 할 수 있는 일의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온 단어들은 흔히 쓰이지만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 그 의미가 퇴색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추상적으로 여겨지기 쉬운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단어들을 자신의 말로 소화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비교해 봄으로써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입술로는 기억하나 가슴으로는 잊어버리는 『성서』의 숱한 구절 중에서도 가장 전형적인 예는 아마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다. 모든 것을 남김없이 수량화 · 추상화하려드는 오늘날의 세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 한 마리의 양은 잊혀지고 무시되어도 좋은 것인가. 한 인간의 자유와 생명의 값어치는 다른 99명의 인간의 그것의 99분의 1로 계산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지극히 작은 한 인간의 생명이 우주 전체와도 맞바꿀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잊혀진 사람들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된다.…우리가 늘상 우리가 인연없는 타인이라는 착각 때문에 외면하고 있는, 그들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이 현저하게 결핍되어 있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권변호사 조영래

우리는 매 순간 순간마다 우주의 새롭고 진귀한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 이 순간은 전에도 없었고 다시 오지도 않을 시간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2 더하기 2는 4이고,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라는 걸 가르친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말해야 한다. "너의 존재가 무엇인 줄 아니? 너의 존재는 놀라운 거야. 너는 진짜 귀한 존재야. 수백만 년이 흐르는 동안 너와 똑같은 아이는 한사람도 없었단다"라고 말이다.

– 파블로 카잘스

인권 118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및 회원단체

단체명	연락처	주소
한국농아인협회	T (02)588-3368 F (02)3473-3119	〈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95-2 센츄리 Ⅱ 오피스텔 B104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T (02)950-0114 F (02)934-8069	〈139-206〉 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771 서울특별시립 맹인복지회관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T (02)713-1187/6 F (02)703-0026	〈121-040〉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73번지 삼창프라 12층 62-2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T (02)761-3414 F (02)761-2589	〈150-0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3 한국보이스카웃빌딩 3층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T (02)718-9363 F (02)718-9366	〈121-040〉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빌딩 1160호
한국장애인부모회	T (02)678-3131 F (02)676-9746	〈150-052〉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119 한강탑오피스텔 12층 1206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T (02)521-5364 F (02)584-7701	〈137-061〉 서울시 서초구 방배 1동 924-13 근복빌딩 6층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T (031)902-1614 F (031)904-1614	〈411-350〉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808번지 한국경진학교
한국교통장애인협회	T (02)2631-2510 F (02)841-8835	〈150-052〉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2동 107-2번지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T (02)938-9101 F (02)938-9156	〈139-220〉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366-6 그랜드프라자 501호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T (02)593-4760 F (02)593-4761	〈137-040〉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4-12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T (02)555-3955 F (02)555-3954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9-20
한국산재노동자협회	T (032)502-7555 F (032)502-8361	〈403-110〉 인천시 부평구 일신동 175-1
부산장애인총연합회	T (051)464-0650 F (051)464-0651	〈603-013〉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51-8
광주장애인총연합회	T (062)513-1080 F (062)513-1079	〈500-180〉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24번지 광주장애인종합체육관내
대전장애인연합회	T (042)625-4678 F (042)635-4679	〈306-02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3
울산장애인총연합회	T (052)269-7878 F (052)266-8850	〈680-011〉 울산시 남구 신정1동 644-2번 (울산우체국 뒤)
전북장애인총연합회	T (063)273-1805 F (063)272-6160	〈560-14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117-18
경남장애인총연합회	T (055)262-8219 F (055)289-9337	〈641-706〉 경상남도 창원시 두대동145번지 창원종합운동장내 129호실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T (064)753-3225 F (064)753-3226	〈690-021〉 제주도 이도 1동 1660-6

■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법률상담)

기관명	연 락 처	주 소
공단본부	국번없이 (02)13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3-10
서울지검청사공단상담실	(02)536-5577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 서울지검내
동부출장소	(02)453-5888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216-2 제일빌딩 402호
남부출장소	(02)2648-5966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13-1 서울지검 남부지청내
북부출장소	(02)972-1765	서울시 노원구 공릉1동 661-8 동신빌딩 503호
서부출장소	(02)713-6009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1 서울지검 서부지청내

의정부출장소	(031)874-0100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8 세광빌딩 3층
인천지부	(032)433-335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988-1 대일빌딩 4층
부천출장소	(032)325-45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2 인천지검 부천지청내
수원지부	(031)213-1331	경기도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90-14 미송빌딩 1층
성남출장소	(031)748-350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94-3 신생빌딩 303호
여주출장소	(031)883-7630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리 361 수원지검 여주지청내
평택출장소	(031)656-9144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245-1 수원지검 평택지청내
춘천지부	(033)251-8301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709-10 화남빌딩 3층
강릉출장소	(033)645-3163	강원도 강릉시 교1동 963-22, 2층
원주출장소	(033)748-0763	강원도 원주시 학성1동 1008 춘천지검 원주지청내
속초출장소	(033)636-8511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53-3, 2층
영월출장소	(033)373-1910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877-1 춘천지검 영월지청내
대전지부	국번없이 (042)13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0 대전지검내
홍성출장소	(041)634-4476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08 대전지검 홍성지청내
공주출장소	(041)857-6132	충남 공주시 반죽동 226-1 2층
논산출장소	(041)745-4478	충남 논산군 강경읍 대흥동 46-1 대전지검 논산지청내
서산출장소	(041)667-4054	충남 서산시 동문동 804-8 대전지검 서산지청내
천안출장소	(041)563-6174	충남 천안시 신부동 72-16 대전지검 천안지청내
청주지부	(043)274-7777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82-1, 2층
충주출장소	(043)854-0402	충북 충주시 교현2동 720-10 청주지검 충주지청내
제천출장소	(043)646-5011	충북 제천시 중앙로2가 68-19, 3층
영동출장소	(043)744-9600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78-11, 2층
대구지부	국번없이 (053)132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86-16 삼양빌딩 3,4층
안동출장소	(054)856-2595	경북 안동시 동부동 67 대구지검 안동지청내
경주출장소	(054)741-6111	경북 경주시 동부동 203-1 대구지검 경주지청내

김천출장소	(054)433-1780	경북 김천시 삼락동 1222 대구지검 김천지청내
상주출장소	(054)535-3277	경북 상주시 만산동 652-2 대구지검 상주지청내
의성출장소	(054)832-5502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리동 748 대구지검 의성지청내
영덕출장소	(054)734-1745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311 대구지검 영덕지청내
포항출장소	(054)251-6111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768 대구지검 포항지청내
부산지부	국번없이 (051)132	부산광역시 서구 부용동2가 1 부산지검내
부산동부출장소	(051)781-07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133 부산지검 동부지청내
울산지부	(052)257-4676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635-3 울산지검내
창원지부	(055)266-3381	경남 창원시 사파동 1 창원지검내
진주출장소	(055)755-6922	경남 진주시 상대동 296-100, 2층
통영출장소	(055)649-1830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59 창원지검 통영지청내
밀양출장소	(055)356-5131	경남 밀양시 삼문동 246 창원지검 밀양지청내
거창출장소	(055)942-8436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11 창원지검 거창지청내
광주지부	국번없이 (062)132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8-33, 2층
목포출장소	(061)277-2002	전남 목포시 용해동 818 광주지검 목포지청내
장흥출장소	(061)863-8856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동리 88 광주지검 장흥지청내
순천출장소	(061)752-6539	전남 순천시 매곡동 419 광주지검 순천지청내
해남출장소	(061)536-9945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390 광주지검 해남지청내
전주지부	(063)251-4033	전북 전주시 덕진동1가 1416-1 전주지검내
군산출장소	(063)452-6696	전북 군산시 조촌동 880 전주지검 군산지청내
정읍출장소	(063)533-9644	전북 정읍시 수성동 609 전주지검 정읍지청내
남원출장소	(063)626-5789	전북 남원시 동충동 141 전주지검 남원지청내
제주지부	(064)753-9955	제주시 이도2동 950-1 제주지검내

법률상담 및 구조

공단의 법률구조업무는 법률상담에서 시작된다. 상담한 결과 구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 가사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화해 조정이나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를 하여 주고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변호해준다.

1. 법률상담

법률상담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상담을 원할때는 공단 사무실 직접 방문상담이나, 전화, 서신, 컴퓨터 등을 통하여 상담할 수 있다.

특히, 서울지부에서는 일요일 및 야간에도 상담을 하고 있으며, 지부 등에서는 공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는 출장상담 이동법률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1) 면접 · 전화상담 - 공단 각 사무실에서 직접상담

·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6시(동절기에는 오후 5시까지)
· 일요일 : 오전 10시 ~ 오후 3시
· 야 간 : 오후 6시 ~ 오후 8시(동절기 : 오후 5시 ~ 오후 7시)
(일요일과 야간상담은 서울지부에서만 실시함)
※ 전화법률상담은 신청인의 과다로 전화연결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가급적 가까운 공단 사무실로 나오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컴퓨터상담 - 인 터 넷 : http://www.klac.or.kr

(3) 차량이동법률상담

(근무시간 : 오전10시~오후5시, 단, 동절기에는 오후4시까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고속터미널		고속터미널		청량리역

2. 법률구조

경제적 이유나 법률상식의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 월 소득15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영세상인,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기타 영세민에게 무료로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 변호, 법률사무에 관해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법률구조는 소송대리, 형사변호, 기타 법률적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써 구조대상사건과 구조대상자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1) 민사 가사사건

공단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사 · 가사사건에 대하여 법률구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 구조대상자

① 농 · 어민
②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③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④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⑤ 국가보훈대상자
⑤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⑥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생활보호대상자 등)
⑦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공단의 규정으로 법률구조의 필요성이 있다고 정한 자(월평균수입 150만원 이하의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 · 퇴직금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

- 사건처리절차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 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법률구조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기도 한다.

공단은 사실조사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히 화해를 이룰수 있도록 권유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 또는 법률구조위원으로 위촉된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공단에서 구조기각으로 결정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의뢰자가 이에 불복하면 공단의 중앙법률구조 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법률구조 심사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된 사건을 재검토하여 구조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 소송비용

소송을 하지 않고 화해로 끝난 사건은 비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소송에 들어간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료된 후에 공단에서 지출한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의뢰자로부터 상환받는다. 이렇게 상환받은 비용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법률구조사업에 다시 쓰이게 된다.

그러나 의뢰자는 공단에 상환할 비용을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단에서도 의뢰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상환하도록 하거나 상환을 면제해주기도 한다.

패소한 사건이나 승소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 기타 소송비용의 상환 또는 회수가 부적당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소송비용의 상환을 면제시켜 주기도 한다.

특히, 법률구조대상자 중 『무료법률구조사업』에서 정한 대상자는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2) 형사사건

공단에서는 민사 · 가사사건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하고 있다. 즉,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공단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변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 대상자

① 농 · 어민
②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③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④ 국가보훈대상자
⑤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생활보호대상자 등)

⑥ 법원이 공단의 소속변호사 또는 공단에 배치된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 사건처리절차

구조신청은 공단 지부 또는 출장소에 서면으로 하면 되고, 공단에서는 구조대상자 여부, 구조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구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구조가 결정되면 소속변호사 등이 형사변호를 하며, 구조기각된 사건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사장은 이의신청 사건을 심사한 결과 원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기각결정을 하고 원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구조 결정을 한다.

- 소송비용

형사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기록등사료, 접견료 등)은 공단에서 부담하고 의뢰자로부터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증권 수수료는 의뢰자가 부담한다.

(3) 행정소송, 헌법소원사건

공단은 2000. 7. 1부터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사건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소송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중 당사자소송사건, 민중소송사건, 기관소송사건은 제외된다.

- 대상자

① 민사, 가사사건과 동일하나 외국인은 제외

② 헌법재판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배치된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헌법소원사건에 한함)

- 사건처리절차와 소송비용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되고 사건처리절차 및 비용은 민사사건과 동일하다.

■ 가정폭력 · 성폭력 상담기관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 전국지부			
이름	사무전화 · 팩스	상담전화	주 소
본부	T(02)2237-1024~7 F(02)2237-1028		서울시 중구 신당1동 236-509 을지빌딩 5층(100-451)
서울	T(02)2272-2161~4 F(02)2272-2190	(02)2263-6464~5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100-391)
서울강서 양천지회	T(02)2605-8455 F(02)2605-8222	(02)2605-8466	서울시 강서구 화곡7동 1075-25 인폼빌딩 5층(157-017)
광주	T(062)363-7739, 0485 F(062)363-0486	(062)363-0442~3, 0487, 1366	광주시 서구 양3동 456-120 서구민한가족생활관 2층(502-826)
대구	T(053)475-8086 F(053)472-1711~2	(053)475-8082~3, 9923	대구시 남구 봉덕3동 561-46 진주빌딩 3층(705-023)
부산	T(051)817-4321~2 F(051)817-4320	(051)817-6464, 6474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653-14
울산	T(052)244-1555 F(052)245-6674	(052)211-1205	울산시 중구 성남동 68-4 2층(681-210)
인천	T(032)527-0090~3 F(032)527-0093	(032)529-2545, 504-3405	인천시 부평구 십정2동 575-23 종로빌딩 2층(403-132)
강화	T(032)934-1903 F(032)934-1902	(032)934-1900	인천시 강화군 강하읍 관청리460-1 (417-800)
강릉	T(033)643-1985 F(033)642-1980	(033)643-1982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62-2 1/3 (210-080)
광명	T(02)2614-7370 F(02)2614-7673	(02)681-0238	경기도 광명시 광명4동 158-239 민주빌딩 2층(423-014)
성남	T(031)751-2050 F(031)751-2051	(031)751-6677, 112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719 인성빌딩 3층(462-130)
수원	T(031)232-7780 F(031)238-7780	(031)232-68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56-10 3층 (442-070)
시흥	T(031)312-4700 F(031)692-7798	(031)692-9100, 9494, 432-6660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487-19 (429-010)

안양	T(031)458-4385, 429-8171~2 F(031)458-4386	(031)454-4394~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937-8 3층(431-082)
김해	T(055)327-6447, 329-6450 F (055)329-6452	(055)329-6451	경남 김해시 봉황동 17-6 3층(621-040)
창원	T(055)266-3722 F(055)283-3722	(055)283-4933	경남 창원시 신월동 68-5 신월민원센타내(641-060)
군산	T(063)445-2286 F(063)445-2286	(063)445-2285	전북 군산시 월명동 18-14 구월명동사무소 2층(573-060)
영광	T(061)353-4994 F(061)353-4994	(061)352-1321~2, 1369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2번지 원강신협 2층(513-800)
익산	T(063)857-8163 F(063)858-9191	(063)858-9191	전북 익산시 남중동 375번지 (570-101)
전주	T(063)287-7324 F(063)286-7324	(063)283-9855, 282-13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2가 6-1 소서빌딩 503호(560-020)
천안	T(041)574-0505~6 F(041)574-0506	(041)572-2000, 572-0505	충남 천안시 쌍용동 886 농협 2층 (330-090)
청주	T(043)252-0966~7 F(043)255-0966	(043)252-0968~9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1가 133-1 3층(360-041)
구미(준)	T(054)458-1388 F(054)458-1389		경북 구미시 원평1동 1060-1 2층 (730-011)
순천(준)	T(061)755-8033~4 F(061)755-8033		전남 순천시 행동 65-23(540-060)
부천(준)	T(031)613-4643 F(031)613-4644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1동 103-1 승일빌딩 5층(420-012)
목포(준)	T(061)283-4551 F(061)283-4510		전남 목포시 옥암동 992-19 근로자복지센타 3층(530-420)
진해(준)	T(055)546-8322 F(055)546-8322		경남 진해시 석동 522-1 상공회의소내 지하(645-280)

기관명	전화 · 팩스 번호	주 소
한국성폭력상담소	T(02)573-1888 F(02)576-7127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51-12 가람빌딩 5층
복지부 여성상담전화	국번없이 1366	

■ 인권문제 관련 기관

기관명	전화 · 팩스 번호	주 소
인권운동사랑방	T(02)741-5363 F(02)741-5364	110-522 /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4층

■ 소비자문제 관련기관

기관명	전화 · 팩스 번호	주 소
한국소비자보호원	T(02) 3460-3000 F(02)529-0408	137-700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한국소비자
보호단체협의회	T(02)790-4050~2 F(02)793-8082	140-013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427
한국소비자연맹	T(02)795-1042 F(02)798-6564	140-211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272-1

■ 종합 상담전화

사회복지법인 생명의 전화 상담센터 (02)763-9191, 02)916-9191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전화 상담센터 (02)715-8600
자비의 전화 상담센터 (02)737-7374

■ 언론기관

언론사(사회부)	전화 · 팩스 번호	주 소	우편번호
경향신문	T(02)3701-1143 F(02)739-428	서울시 중구 정동 22	100-702
국민일보	T(02)7054-341 F(02)7054-349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371-16	121-110
동아일보	T(02)2020-1240 F(02)2020-1249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9	120-715
문화일보	T(02)738-9660 F(02)3701-5130	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68	120-011
서울신문	T(02)721-5151 F(02)721-5263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100-756
세계일보	T(02)799-4240 F(02)799-4651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63	140-013
조선일보	T(02)724-5258 F(02)724-5359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61	100-756
중앙일보	T(02)751-5040 F(02)751-5457	서울시 중구 순화동 7	100-759
한겨레신문	T(02)7100-376 F(02)7100-36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6-25	121-020
한국일보	T(02)724-2312 F(02)739-0266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14	110-792
KBS	T(02)781-1000 F(02)781-417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150-790
MBC	T(02)784-2000 F(02)784-088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150-728
SBS	T(02)780-0006 F(02)780-253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150-010

언론을 통해 본 2000 장애인인권

■ 장애인 폭력관련 기사

○ 최경아씨 사건 재수사 미진, 사인 규명 촉구

〔대구=김명희 기자〕 지난해 의문사를 당한 정신지체장애인 최경아씨(31)의 사인규명을 놓고 대구지체장애인협회(회장 윤수동)가 지난달 31일 남부경찰서에 진정서를 내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지장협은 지난 3월11일에도 대구지검에 진정서를 내고 최씨의 사인규명과 재조사를 요청한 적이 있으며, 지난 3일 윤수동 회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사실여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장협측은 최씨의 사인규명과 관련한 재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 10일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남부경찰서에서 항의집회를 여는 한편 최씨가 살던 이아무개씨 집까지 거리행진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20일 '장애인의 날' 행사에도 검은 리본을 달아 최씨의 억울한 죽음을 상기시키고, 재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차원에서 항의집회를 갖기로 했다.

또한 지난달 30일 방영된 한국방송공사 '추적 60분'에서도 최경아씨의 죽음과 관련해 △최씨가 함께 살고 있던 이아무개씨(여 · 69)로부터 잦은 구타와 학대를 당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 주변인물들의 증언 △최씨가 자살한 것으로 판정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물로 채택된 우유병에 독극물질이 전혀 없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검사결과 △당시 최씨의 사인을 '빙초산을 먹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정한 검사는 양아무개씨가 이씨의 사위라는 점 등을 집중 보도해 최씨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게다가 이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사회단체에서 활동한 적이 있고, 최씨의 자살에 처음 의문을 제기한 경찰일보 신용대 기자는 "이씨가 최씨의 팔을 뒤로 제껴 손목을 묶은 상태에서 나무막대기를 끼워 눕혀놓고 등위에 발로 밟고 올라서서 최씨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만류한 적이 있다"는 배화숙씨(49)의 자필증언과 이씨 집의 대문이 이씨외에는 안이나 밖에서 열 수 없도록 특수제작 된 점 등을 들며 최씨가 자살하기 위해 빙초산을 사러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

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75년 6월4일 최씨가 6세때 일시 보호된 적이 있는' 백합어린이집' (당시 백합보육원)에는 "시청 숙직계 의뢰, 부모가 있다고 함" 이라는 기록이 남아있다.(장애인복지신문 2000. 4. 16)

○ 여성장애인 성폭행 대부분 지인(知人)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이예자 상임대표는 20일 "여성장애인들이 친지나 동네사람 등 주변사람들로부터 심각한 성폭력 피해를 보고 있으나 가해자들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실태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밀조사를 건의했다.

이대표는 논문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정책적 대안' 을 발표," 지난 3년간 장애인단체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여성 상담기록 40건 중 37건이 가족,친척,직장동료,상사,이웃주민 등 지인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피해연령은 10~20세가 16건,21~30세가 14건,31~40세가 7건,10세 미만이 2건,40세 이상이 1건 등이었으며 미성년자의 피해가 전체의 47.5%를 차지했다.

피해여성의 장애유형은 정신지체가 25명,지체장애 7명,시각장애 3명,언어 · 청각장애 2명 등의 순으로 성폭행을 당해도 신고가 어려운 정신지체 장애여성들의 비율이 높았다.

이대표는 "피해 장애여성들은 심한 신체적 · 정신적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사건 정황을 일관성있게 진술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부인할 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밀조사와 함께 정부의 정책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2000. 4. 20)

○ 아는 얼굴에 성폭력피해,' 증거불충분' 무혐의 많아

장애인들이 심각한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으나 가해자들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이예자 상임대표는 20일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정책적 대안' 이라는 논문을 발표, 지난 3년간 각종 장애인 단체의 성폭력 상담기록 및 피해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40건 중 37건이 가족.친척.직장상사.직장동료.이웃 등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들 가운데 10~20세가 16건 등으로 20세 미만의 피해가 전체의 47.5%에 달했으며 피해자의 장애유형은 정신지체 25명, 지체장애 7명, 시각장애 3명, 언어.청각장애 2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피해 장애여성들이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으나 사건 정황을 일관성있게 진술하지 못해 가해자 대부분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고 있다"며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2000. 4. 21)

○ 정신장애女性, 성폭행특별법 있으나마나

정신지체 3급인 A씨(22 · 여)는 18세 때인 지난 96년 다니던 봉제공장 직장동료 K씨(30)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K씨는 판단력이 부족한 A씨에게 "나이가 차면 이런 것을 알아야 한다"고 꾀어 지난 5년간 회사 창고 등으로 끌고가 성 노리개로 삼았다. 회사직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K씨는 "A씨가 동의했다"고 주장, 처벌받지 않았다.

특수학교 학생 B양(18)은 유치원생의 판단수준밖에 안되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 이웃집 아저씨는 지난 3월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수차례 농락했다. B양 부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지만 주위 눈초리가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가 자체조사해 22일 발표한 여성 정신지체장애인 성폭행 사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성폭행범은 직장동료, 이웃에서부터 아버지 친구, 친척 등 가까운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 고모집에 사는 정신지체아 C양(14)은 고모부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장애여성 성폭행의 특징은 피해자가 사소한 유혹에 잘 넘어가는 데다 판단력 부족으로 피해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반 강간사건과는 달리 오랜 기간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D씨(34 · 여)는 동네 노인 H씨(68) 등 2명에게 7년간, E씨(30 · 여)는 아버지 친구 L씨(57)의 위협에 눌려 무려 10년간 성폭행을 당했지만 가족들이 알아채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점은 뒤늦게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해도 피해자가 정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 성폭행범이 증거부족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난 98년 친고죄인 강간죄를 보완하기 위해 피해자의 직접신고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성폭력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명확한 사실관계와 정황증거를 제시해야 범죄가 성립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확정판결에서 유죄를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전문가에 의한 대리진술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지체장애인을 성 노리개로 삼는 파렴치범에 대해 중형을 내리는 쪽으로 법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2000. 5. 22)

○ 상습폭행남편 살해장애아내 집행유예

상습적으로 자신을 폭행하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장애인 아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백춘기)는 26일 남편 최모(44 · 무직)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모(39 · 1급 지체 장애인 · 군포시)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을 살해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평소 유씨를 상습 폭행한 남편에 대한 순간적인 반감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범행이 인정된다』며 『유씨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뇌성마비와 척추장애 1급 지체장애인인 유씨는 올 1월 남편 최모 (44 · 무직)씨가 술에 취해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자 부엌에 있는 흉기로 남편의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2일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조선일보 2000. 5. 26)

○ 장애인 단체가 여성장애인 성폭력 대책 촉구 나서

강릉 옥계면에서 일어난 마을주민 집단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자 장애인단체가 대책마련 촉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렬)은 20일 연구소 강당에서 '성폭력에 짓밟히고 있는 정신지체여성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 을 갖고 △정부의 정신지체여성을 위한 특별보호대책 마련 △쉼터 및 상담실 마련 △정신지체인 성폭력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복지부와 교육부의 정신지체인에 대한 성교육프로그램 마련 △정신지체인에 대한 결혼과 성, 육아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전담기관 설립 등을 촉구했다.

최근 몇 달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접수된 정신지체인 성폭력 사건은 4건이지만 여성의 전화등 여성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에 접수된 성폭력 사례가 드러나면 더 많은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이 성폭력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연구소 인권센터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과거에는 시설내의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던 반면 강릉사건에서 보듯이 최근 들어 마을주민, 회사동료 등 대부분 면식범에 의해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들 피해 여성장애인들은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상황인 빈곤한 가정에서 방치된 채 살고 있는 정신지체인들로 나타났다.

또한 성폭력을 당했다 치더라도 대부분 목격자나 피해자 부모들이 마을 주민인 가해자에 대해 증언이나 고소를 꺼리고 있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 가해자들은 간단한 물건이나 말로 이들을 현혹해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

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 가족을 협박하고 사회속에서 거리낌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98년 개정된 성폭력특별법에는 정신지체인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 비친고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피해를 당한 정신지체인 가족이 합의를 하거나 고소를 하지 않아 가해자처벌에 대한 판례가 없는 실정이다.

연구소는 "정신지체인에 대한 성폭력은 장애인과 가족에게 사회적 존재로서의 무기력감을 주고 피해의식을 키워주는등 사회의 일체감을 무너뜨리게 하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정신지체인이 성폭력희생자로 살아가지 않고 사회의 주체로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센터 조문순 팀장은 "현재 정신지체인 성폭력에 대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쉼터 마련등의 대책마련은 민간과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신문 2000. 6. 29)

■ 교육현장에 있어서 장애인차별

○ 서원대, 장애 이유 원서접수 거부 물의

대학이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해 인권침해의 논란을 빚고 있다.

구랍 28일 서원대학교에 일반전형으로 원서를 접수하려던 서주현씨(뇌성마비 1급)가 학교측으로부터 장애가 심해 학교시설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원서접수조차 거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서원대학교 입학관리과는 서씨에 대해 "학교시설이 불편하므로 원서 접수가 곤란하다"고 말했고 서씨는 "학교시설이 불편한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런 일들에 대한 각오와 대처 방법 또한 준비되어 있다"고 주장했으나 학교측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또한 서씨가 "장애인이라서 특혜를 바라는 것은 없다"며 "일반학생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원서 접수기회라도 달라"고 계속 주장하자 뒤늦게 관계자들과 회의를 해 본 후에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이에 서씨는 대학측의 미온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고 원서접수를 포기했으며, 현재 타 대학에 원서를 넣고 실기시험을 대비하는 중이다.

이에 대해 서원대학교 입학관리과는 "우리 대학은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다니기 매우 힘들다"며 "입학해서 더 실망하는 것보다 우리 대학건물들을 이용 가능한 장애인인지를 판단해서 원서를 접수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해 원서접수 시 입학관리과에서 하는 상담이 장애인

에게 대학의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전심의기관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했다. 또한 입학관리과 관계자는 제3자의 도움 없이 다닐 수 있는 장애인이란 규정에 대한 판단근거나 기준은 없으며 입학전형위원회의 판단으로 결정되어 진다고 말해 객관성이 없음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대학제도과 하수관 사무관은 "서원대학교의 태도는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분명하지만 97년도부터 입학관리가 전적으로 대학에 맡겨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말하며 "대학자율화 정책에 장애인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각 대학측에 촉구하고 관계 법령들을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지체장애인으로 대학을 졸업한 한 장애인은 "편의시설이 갖춰진 대학을 선택하고 않고는 장애인 자신이 결정할 문제이며 제3자가 판단할 수는 없다"며 장애유무를 제시하도록 하는 입시요강 자체가 문제임을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계의 한 관계자는 "이런 현상은 편의시설과 같은 물리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에 관한 인식의 부재 때문이므로 입시철마다 각 대학에 대한 적절한 강제가 필요하며 인권침해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원대학교는 입시요강에 '제3자의 도움이 필요 없이 수학이 가능한 장애인' 만 원서접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체장애인이 지원 할 시에는 입학관리실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장애인복지신문 2000. 1. 07)

○ 시험 볼 기회의 박탈은 받아들일 수 없어

저는 25세의 뇌성마비 1급 장애 여성입니다.

19세 때 검정고시를 준비해 97년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습니다. 그리고 대입을 준비해 98년에 수능을 봤습니다. 첫 대입을 낙방하고 전 다시 재수를 해 수능을 다시 봤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이 시작됐고 선택해 놓은 대학으로 갔습니다. 참고로 저는 미대를 지원하고자 일반학생과 똑같이 실기도 준비했습니다.

12월28일… 접수가 시작되는 날 청주에 있는 '서원대학교' 로 갔습니다. 아침 8시에 출발하여 약 11시30분에 도착했습니다. '서원대학교' 에는 장애인 특별전형이 없어 전 일반전형으로 시험을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시요강에 지체장애인이 지원할 때에는 상담을 하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입학관리실로 찾아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담당자로 보이는 남자 분이 절 보자마자 한 첫마디는 "저… 좀 저희 학교로선 곤란하겠는데요..."였습니다. 저와 동행하신 미술선생님께선 당황해 이유를 물었습니다. 물음에 대한 대답은 저의 인지능력이 부족함도 아니고 단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란 것입니다. 덧붙여

학교 시설의 불편함만 늘어놓았습니다.

여기서 납득이 안되는 것은 현재 우리 나라에 있는 대학 중에 편의시설이 잘된 학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전 그런 것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대학에선 당연하게 받아주었다는 것을 설명하였으나 계단이고 뭐고 하면서 휠체어 장애인들의 약점을 들며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전 학교시설이 불편하단 것도 잘 알며 다닐 경우 힘든 일 겪어야 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 각오와 대처방법까지 준비했습니다. 저희 선생님은 어떻게든 설득을 했지만 담당관은 "제3자의 도움이 필요 없는 정도의 장애인만 받는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자격요건이 아닌 저의 눈에 보이는 장애로만 저를 판단하고 원서조차 받질 않았습니다.

전 어떤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며 일반학생과 같은 조건하에 시험을 치르고 그에 대한 결과를 바란 것 뿐이었습니다. 어떤 학교에 원서를 내는 것은 학생의 자유가 아닙니까? 전 도저히 용납이 되질 않아 다른 학교의 예를 들어 주었습니다.

이미 한번의 입시… 그 학교에선 날 받아주었고 일반학생들과 똥등하게 시험을 치른 일들을 … 시험을 치르고 제가 성적이 나빠서 떨어졌다면 납득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험 볼 기회마저 박탈한다면 장애인은 대학에도 가지 말란 말입니까?이것은 장애인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의무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담당관은 자신의 가정에도 1급 장애인이 있다며 이러는 것이 안타깝다며 자신을 합리화시켰습니다. 저희 선생님은 계속 사정을 하였습니다. 받아달라며...옆에서 보는 전 너무 비참했습니다.

단지 시설이 미비해서라면 대학에 갈 장애인이 몇이나 될까요. 최고의 지성인을 육성하고 인재들을 발굴하는 소위 대학이라는 곳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을 한다는 것이 우습습니다.

기회를 줘보지도 않고서 단지 눈에 보이는 장애, 겉모습으로만 안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 그 담당관이 말문이 막힐 때면 반복하던 "제3자의 도움이 필요없는 자" 비장애인들도 살아가면서 단 한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지내온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회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 돕고 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장애인은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하면 약하고 도움만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대학을 가겠다고 하는 장애인이라면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장애인이라면 오히려 도움받기를 원치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또한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대중교통도 잘 이용합니다. 혼자 힘으로도 할 수 있는 일에선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혼

자 해도 안되는 것에 한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므로 담당관이 내세웠던 이유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말 교육받을 의무와 권리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 일은 결코 나 하나만의 일이 아닐 수 있기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 주위에도 대입을 준비하는 장애인이 있는데 저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무참히 밟혔고 이 사회에 대한 적개심만 생기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현재 저는 타 대학에 원서를 넣었고 실기시험에 대비해 열심히 준비중입니다. 이번 일은 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1999년 12월30일 서주현 (장애인복지신문 2000. 1. 7)

○ 장애학생에겐 높기만 한 대학문턱

중증장애학생에 대한 대학의 입학 거부 사례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시각장애 모상훈(21) 군은 조선대 특수교육학과에 지원하려 했지만 "1급 시각장애인은 레포트나 시험에 있어 대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학교측의 답변에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시각장애인 박명수(25) 군도 마찬가지. 입학관련 문의차 서울신학대에 전화를 걸은 박군은 1급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당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입학규정상 혼자서 생활이 가능한 2~6급 장애인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학교측의 입장.

일반전형으로 서원대 미대에 응시하려 했던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서주현(25)양은 지체장애인이 지원할 경우 상담을 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원서제출 전 입학관리과를 찾았다. 그러나 학교측은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원이 불가능하다' 며 '제3자의 도움없이도 수학이 가능한 장애인만 입학을 허가한다' 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는 비단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광주 세광학교 박근영 교사는 "학생들의 입학원서를 넣기 위해 여러 차례 대학들을 방문하고 항의전화도 해봤지만 소용없었다"며 "중증장애학생의 지원조차 거부하는 학교측의 입장에 오히려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처럼 각 대학들은 점수 부족이 아닌 중증장애인이란 이유로 장애학생들의 입학지원을 거부, 대학갈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명수 군은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꼭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또한 1급 장애인이지만 대중교통 이용부터 거의 모든 일을 혼자서 하고 있다"며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입학지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나사렛대 김종인 교수는 "장애학생이 대학에 입학원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고, 또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신체적 결함을 능력의 장애로 보고 지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대학측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김 교수는 "장애인 인권보장의 기본은 교육권 확보"라고 강조하면서 "장애가 심하다는 이유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곧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학의 인식개선을 촉구했다.(장애인신문 2000. 1. 24)

○ 대학편입 거부당한 장애인, 법정투쟁 준비

대학 편입을 거부당한 한 시각장애인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10일 한국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에 따르면 대전 한성신학대 종교음악과를 다음주 졸업하는 황선경씨(28 · 여)는 지난 9일 마감된 청주대 음악교육학과에 편입원서를 내려다 학교측으로부터 원서접수를 거부당했다.

17살 때 시신경 이상으로 앞을 전혀볼 수 없게 된 황씨는 "같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싶은 꿈에 편입하려 했으나 학교측은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원서조차 받지 않았다"며 "학교측이 '왜 하필 우리 학교에 원서를 내느냐' 고 감정적으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황씨뿐 아니라 올해 입시에서 청주 서원대, 건국대에서 각각 뇌성마비 지체장애인 입학을 거부한 사례를 발견하고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 고발 · 고소 등 법적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청주대 황신모 교무처장은 "특수교육진흥법은 중 · 고등학교에 대한 규정으로 대학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더구나 특수교육을 위한 시설설치 의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법적인 하자는 없다"며 "아무런 설비가 없는 상태에서 황씨를 받아들이면 교육기회면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제13조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편입학포함)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학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면 해당 학교장은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1천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일보 2000. 2. 10)

○ 편입학 허용 장애인에 청주大, 각서요구 물의

최근 청주대학교가 1급 시각장애인의 편입학 거부로 물의 (본보 10일자 31면,일부 지방 11일자)를 일으킨 데 이어 편입학허용 조건으로 '학업에 필요한 시설지원에 대해 요청하지 않겠다' 는 각서작성을 요구, 또다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한국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렬 · 金正烈)에 따르면 청주대는 지난 12일 시각장애인 황선경(여.28 · 한성신학대졸)씨의 편입을 허용키로 결정한 뒤 황씨를 불러 '입학 이후 학업에 필요한 시설 등의 지원 요청을 전혀 하지 않겠다' 는 부모 명의의 각서를 요구했다는 것.

당사자인 황씨는 "지난 4년간 대학생활도 시설도움없이 혼자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동의서를 쓰고 입학할 수도 있지만 전체 장애인 권익을 위해서 학교측의 인권침해를 따지겠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2000. 2. 15)

○ 장애인 울리는 교육大 입시요강

'곰보,언청이,반점이 있으면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없다. 키도 남자는 1백60㎝,여자는 1백58㎝ 이상이어야 한다' .

전국의 모든 교육대학들이 50년 전에 제정된 입시요강을 고집하며 지나치게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소한 신체상 흠을 불합격사유로 제시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교육대학들이 요구하고 있는 신체조건은 중등학교 교사나 일반공무원 채용조건보다 훨씬 까다로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제기되고 있다.

각 대학의 모집요강을 보면 서울교대는 양쪽 눈 교정시력이 0.4 미만이거나 곰보,언청이,사시,반점 등 용모 이상자를 불합격시키고 있다.

서울교대는 이 규정에 따라 2000학년도 신입생 선발과정 중 한쪽 시력이 1.2로 정상이지만 다른 한쪽 눈이 실명했다는 이유로 김모군(18)을 탈락시켰다가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로부터 장애인복지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교대는 최근 입시사정위원회를 다시 열어 김군을 입학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으나 김군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교사의 꿈을 접고 복수합격한 다른 대학으로 진로를 이미 바꿨다.

김군의 부친 김종원씨(48)는 "특차지원할 때 일부 의대에서도 전혀 문제 없으니 지원하란 권유를 받았으나 초등학교 교사가 꿈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서울교대에 지원,합격 통보를 받았으나 뒤늦게 신체기준을 들먹이는 대학측 처분에 따라 최종 불합격됐다"며 "대학측에 선처를 호소했으나 거절당해 손해배상소송,헌법소원 등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다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의 여준민 간사는 "장애인에 대한 어린이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더불어 사는 모습을 솔선수범하기 위해서도 초등학교에 장애인 선생님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장애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정도의 기준을 들먹이며 불합격시키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김씨와 함께 법적대응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대뿐 아니라 부산교대,대구교대,인천교대,진주교대 등도 곰보,반점 등을 불합격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들 대학이 내세우는 불합격 이유는 '학습자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다' 는 것.

나머지 교육대학들도 청력이나 손가락 이상 등까지 불합격기준으로 삼고 있어 장애인 차별 조항을 두고 있긴 마찬가지다.

또 이들 교대간 요강도 제각각이다. 인천교대는 남자의 경우 1백60㎝,여자 1백52㎝가 넘지 않으면 불합격시키는데 반해 서울교대와 부산교대는 남자의 경우 1백58㎝,여자 1백50㎝가 넘으면 합격할 수 있도록 했다. 청주교대 역시 '키가 지나치게 작은 경우' 를 불합격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어 신장으로 합격여부를 차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교대가 내세우는 불합격기준은 공무원 채용 신체규정에도 없을 뿐 아니라 중등교사가 되는 데에도 요구하지 않는 것들이다.

초등학교 교사를 배출하는 국립대학 중 교원대는 유일하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이면 전원 합격시키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국민일보 2000. 2. 23)

○ "대학서 차별 조장" 심각한 우려 낳아

서울교대가 초등교사 자격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해 충격을 주고 있다.

2000년도 서울교육대학교(총장 이백휘) 특차전형에 합격한 시각장애인 김훈태씨가 지난해 12월 27일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입학을 할 수 없게 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씨는 한쪽 눈은 전맹이고 한쪽눈은 1.2인 6급 시각장애인으로 서울교대가 규정하고 있는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인 '양안 교정시력이 0.4미만인 자' 라는 규정 때문에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김씨의 불합격 판정에 대해 서울교대측에 부당함을 제기한 김훈태씨의 아버지 김종원씨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서도 '두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3이하인 자' 로 규정되어 있어 한쪽 눈만 전맹이면 임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교대가 훈태를 불합격 처리했다"며 "국립대학이 교사를 임용하는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장애인에게 기회제공을 하지 않는 것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대 측은 "김씨의 항의로 입학전형위원회를 열었다"며 "회의 결과 양안 교정시력 0.4미만 인 자라는 규정은 한쪽 눈만 실명인자에게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한쪽 눈이 실명인 경우 원근감각이 부족해 아이들을 지도하기 어렵다"고 불합격 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한 서울교대는 "초등교사는 중등교사와 달리 특성상 전과목을 지도해야 하므로 신체에 결

함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시각장애인총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원근감각에 문제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원근감각이 교사의 직무수행능력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며 "공무원 임용 등에도 적용되고 있는 이러한 규정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서 나온 것이므로 헌법소원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라고 반박하며 향후 적극적인 대응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지체장애인으로 중등 특수학급 교사로 근무하는 모 특수교사는 "초등교육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신체검사 규정 때문에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범대학의 교사양성과정이 있는 특수교육과에 진학했다"며 "현재 담임을 맡고 있는데 초반기에는 장애가 중학생 아이들 지도에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해 장애를 근거로 교사의 능력을 평가하는 서울교대의 전형 원칙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미국의 경우도 74년 가만킨 사건을 계기로 현재는 공립학교에서의 장애인 교사에 대한 차별을 규제하고 있다.

서울교대의 신체검사 불합격 사건에 대해 장애인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초등학교는 교과 전담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초등교사는 체육등 전과목을 지도해야 하므로 장애인은 초등교사가 될 수 없다는 서울교대의 입장은 교육계의 흐름과도 어긋난다"며 신체검사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장애인의 권익을 제약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서울교대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은 △신체장애인 △신장이 남자 158센티미터 여자 150센티미터 미만인자 △간질자 △색각 이상자 △양안교정시력이 0.4 미만인자 △두 귀의 청력이 40데시벨이상인자 △음치(음치에 준할 정도로 음감이 둔한자) △용모에 이상(곰보, 반점, 심한 흉터, 언청이, 사시 등)이 있는자 △기타 초등학교 교사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심신장애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신체장애인은 손발 및 팔다리의 결함, 꼽추, 벙어리, 나병 등으로 신체활동에 지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신문 2000. 2. 28)

○ 원서 거부 대학과 정부 고발

장애를 이유로 대학입학 원서접수를 거부당했던 지체장애인이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고소·고발 및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해 12월 서원대학교에 지원하려다 장애를 이유로 원서접수조차 거부당했던 서주현씨와 노들장애인야학은 21일 청주지방검찰청에 서원대학교를 헌법, 교육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하고 인천지방검찰청에 서원대학교와 교육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했다.

서씨와 노들장애인야학은 고소장에서 "각 대학이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서씨가 수학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원서접수조차 거부한 것은 권리의 침해"며 "입시요강에서 서원대가 신체장애인의 입학에 제한을 둔 것 자체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사립대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갖고 있어 각급 학교들이 헌법과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이에 상응할 시설과 조치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이유를 밝혔다.

노들장애인야학 박경석씨는 "사례에 대한 판례가 없어 힘들었다"며 "대학에서 원서 거부한 사건 뿐만 아니라 장애를 이유로 초등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하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자격까지 취득한 서씨에게 보상은 당연한 것으로 본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서씨와 노들장애인야학은 서주현씨 및 서씨 부모들의 손해를 일괄해 서씨는 8천만원 부모는 각각 1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요구했다.(장애인복지신문 2000. 3. 30)

○ 장애인에 '끝없는 차별'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

정부가 매년 장애인 복지 및 고용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 왔지만 구호에만 머물러 있고 정부기관이나 기업들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실효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지성의 전당인 대학들마저 입학 과정에서 장애인을 차별대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장애인들은 이처럼 입학,취업에서 커다란 불이익을 받는데다 실업률은 엄청나게 높아 사회 인식의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9일 본보 취재 결과에 따르면 대학들은 '장애인 특례입학제'를 도입했지만 사전면접,장애판정위원회 설치 등을 이용해 장애인의 입학을 교묘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가 전국 195개 4년제 대학의 신입생 모집요강을 조사한 결과 원서제출 전 사전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이 고려대 한양대 등 51개교,장애판정위를 설치한 학교가 동국대 등 13개교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중앙대 부산대 등 21개교는 입학원서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명시,우회적으로 장애인 입학을 거부하고 있으며 경북대 등 25개교는 입학자격을 '제3자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장애인'이라고 제한했다. 장애판정위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곳도 국민대 공주교대 등 4개교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2% 고용 의무가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체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곳도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300인 이상 1919개 사업체 중 고용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곳은 197개로 10.3%였고,전체 대상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고용률 2%의 4분의 1인 0.54%에 불과했다.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1.32%의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 일반 업체보다 높았으나 역시 2%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서울기능장애인협회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근로능력 등을 조사한 결과 일반인 실업률이 5.3%인데 반해 장애인 실업률은 80%선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일보 2000. 4. 19)

○ 장애인 원서접수 거부…서원대 약식기소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남기춘)는 23일 뇌성마비 지체장애인의 입학원서 접수를 거부한 서원대를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원대는 지난해 12월 1급 지체장애인인 徐모(25.여)씨가 이 대학 서양화과에 입학원서를 내려 했으나 학교에 장애인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한 혐의다.

검찰은 "학교측이 원서접수를 거부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입학에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장애인복지법 12조 4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원대측은 "원서접수 첫날 입학관리과를 찾아온 徐씨와의 상담과정에서 학교에 장애인 시설이 없다는 설명을 했을 뿐 접수를 거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徐씨는 지난 3월 서원대를 청주지검에 고발했으며 인천지방법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중앙일보 2000. 8. 24)

○ '장애인학교 반대' 패소

지역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다툼을 벌여온 서울 일원동 아파트 주민들이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손지열)는 서울 일원동 아파트 주민 6명이 특수학교 설립 승인을 취소하라며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주민들이 거주지에 기피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으려는 이른바 「님비(NIMBY)」현상에 제동을 건 것으로 법조계에선 해석하고 있다.

재판부는『교육법 등은 행정주체가 정책 판단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 설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특수학교 설립 승인으로 이 지역 주민 자녀들의 초등학교 취학이 아주 곤란하게 됐다거나, 다른 지역보다 교육환경이 크게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서울시가 수서지구 택지개발 당시 초등학교 부지로 예정됐던 땅을 밀알복지재단에

매각하고 서울시교육감이 이 부지에 자폐증 등 정서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계획을 승인하자 교육권 침해 등을 이유로 96년 소송을 냈다. (조선일보 2000. 9. 21)

■ 접근권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

○ 차량진입 금지봉, 장애물로 불편하다

〔광주〕 차량진입 금지봉, 장애물로 불편 광주시내 간선도로에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면서 행정기관이 멋대로 차량진입 금지봉을 설치해 노약자와 장애인을 비롯한 보행자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주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롯데백화점~광주시청, 무등산장입구~광주역, 전남대병원~장동교차로, 용봉천 복개도로, 운천저수지 부근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차량 주차를 막는다며 수억원을 들여 높이 40~50㎝, 지름 10~30㎝ 규모로 차량진입 금지봉 1216개를 설치했다.

금지봉은 차량의 인도 진입을 막는 스테인리스나 플라스틱 구조물로 개당 재료비가 6만~30만원이고 설치비가 별도로 들어간다. 이런 금지봉들이 간선도로 주변에 설치되자 주민들은 가뜩이나 비좁은 인도 한가운데에 1~3개의 지주를 촘촘하게 박아 보행자는 물론 자전거에도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노약자 · 장애인들도 걸려 넘어지거나 지팡이를 부러뜨릴 우려가 높아 인도를 다니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며 전시효과만 노린 탁상행정을 비판했다.

한국맹인복지연합회 광주지부는 "설치 위치를 전혀 가늠할 길이 없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면서 "행정기관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주민 김재근(66 · 남구 방림동)씨는 "거리가 어두워지는 밤시간에는 어떻게 하라고 인도를 가로막는 거추장스런 장애물을 설치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런 무용지물을 설치하는 데 쓸 돈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광주시 박재수 도로시설담당은 "행정자치부의 지시공문에 따라 자전거도로마다 금지봉을 설치했다"면서 "보도블럭 파손과 투수콘 침하를 막고 자전거 통행이 쉽도록 하려는 시설물이다"고 해명했다. (한겨레 2000. 1. 7)

○ 장애인 단체마저 편의시설 외면

오는 4월까지 공공시설물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상당수 장애

인단체 건물에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점자블럭,경사로,음성신호유도기 등의 편의시설이 없어 장애인들이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부산시가 위탁운영 형식으로 지난 91년 건립한 북구 구포동 맹인복지관은 월 1천명 가량의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을 오르내릴 수밖에 없어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이 건물은 모든 이동로가 계단이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지체장애인들은 접근 자체가 아예 불가능 한 실정이다.

맹인복지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시각장애인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크게 다친 적이 있다"며 "설계 때부터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돼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시 소유건물 2층에 임대해 있는 동구 초량동 한국맹인복지연합회 부산지부도 점자블럭,점자안내판,음성신호유도기 등의 시설이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벽에 부딪히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 95년 지하철 초량역부터 맹인복지연합회 건물까지 점자블럭이 설치됐으나 관리소홀로 훼손이 심한 상태며,연합회 건물 1층에는 초량소방파출소가 들어와 있어 번잡한 입구에서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외에도 일부 장애인단체의 사무실이 타 기관의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어 임의로 시설물 구조변경이 어려워 리프트를 설치하지 못하거나 화장실에 휠체어가 출입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타인의 건물에 임대해 있는 장애인단체의 경우는 시설개조에 어려움이 있어 대안마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맹인복지관 등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 하겠다"고 밝혔다.(장애복지21 2000. 1. 31)

○ '장애인도 투표하고 싶다.'

부산장애인총연합은 15일 4.13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들의 주권행사를 위해 투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완비와 자원봉사자 배치 점자형 홍보물 발행 합동연설회때 수화통역 장애인 부재자투표 홍보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선관위에 건의키로 했다.

장애인연합측은 "지역 장애인 유권자가 6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그동안 당국의 배려 부족으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특히 투표소가 지하 또는 2, 3층에 배치돼 접근이 어려웠고, 점자홍보물이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후보자의 공약이나 경력조차 모른채 투표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1998년 6 · 4 지방선거때 부산지역 전체 1,164개 투표소 가운데 34%가 2층(300곳), 지하(75곳), 3층(21곳) 등에 배치돼 보호자가 없으면 주권행사가 어려웠다.

총연합측은 이같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18일 오후2시 부산역 광장에서 장애인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했다. (한국일보 2000. 3. 16)

○ 불편한 장애인 시설…장애인 내치는 지하철

휠체어 장애인들은 여전히 지하철 타기가 겁난다.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지하철 역내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가 구조적인 결함으로 오히려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휠체어 리프트를 너무 자주 타야 하는데다 그나마 설치돼 있는 리프트도 연결이 제대로 안 돼 장애인들의 지하철 이용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의 경우 승강장까지 지하 3층 깊이지만 휠체어 리프트는 입구에서부터 지하 1층까지만 연결돼 있다. 2,3층은 계단을 이용하게 돼 있어 사실상 휠체어 리프트는 눈가림용일 뿐이다.

또 3호선 양재역은 고정식 리프트가 설치돼 있으나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어 휠체어 앞바퀴가 틈새로 빠져버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승차가 어렵다.

서울지하철 1기(1~4호선)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학여울역과 잠실역 단 2곳 뿐이다. 휠체어 리프트는 을지로입구,종합운동장,학여울 등 36개 역에 설치돼 있으나 사용하기가 불편해 장애인들이 외면하고 있다.

최근 개통된 서울지하철 2기 지하철(5~8호선)은 설계 당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염두에 뒀지만 총 53개역에 설치된 장애인 리프트 1백41대 가운데 안전장치가 돼 있는 리프트는 31개에 불과했다. 또 엘리베이터도 29개역에만 설치돼 있다.

부산지하철의 경우 연제역과 부암역에 설치돼 있는 8대의 휠체어리프트는 배터리충전용이어서 3~4번만 연달아 사용하면 방전이 돼 작동이 중단된다. 지하철 1 · 2호선 19개역에 설치한 휠체어리프트 19대는 추락방지대나 휠체어 고정장치 등 안전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다.

대구지하철공사는 지난 96~97년 3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철 1호선 29개역에 1백12대의 전기식 휠체어리프트(대당 5천만원선)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모두 추락방지대나 휠체어 고정장치 등 안전장치는 없는 상태다.

지난해 10월 개통된 인천지하철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엉망이기는 마찬가지다.

22개역에 설치된 70대의 휠체어리프트 가운데 추락방지대나 휠체어 고정장치가 마련된 곳은 한군데도 없다.

시청역의 경우 입구에서 1백m쯤 떨어진 곳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으나 경사가 심한 곳에 위치해 있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 엘리베이터가 승강장까지 연결돼 있지 않아 지하철역 입구에서 승강장까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와 휠체어 리프트를 3차례 갈아 타야 한다.

전국을 돌며 휠체어리프트 시설 보완 운동을 벌이고 있는 지체장애인 2급 박종태씨(43 ·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서울과 부산,대구,인천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장애인 이용시설은 여전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휠체어 리프트에 추락방지대가 설치돼 있지 않아 탈 때마다 불안하고 사용도 꺼리고 있다"며 "엘리베이터보다 예산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활용률이 적은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2000. 3. 27)

○ [대전] 장애유권자 외면하는 후보들

4 · 13 총선 후보자들이 장애인을 위한 유인물 등을 제작하는데 인색해 장애인 유권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3일 대전시 · 충청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대전시 31명, 충청남도 53명 등 총 84명의 후보자들이 접수한 선거공보물 가운데 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 공보물을 낸 후보자는 대전 11명, 충남 3명 등 14명에 그쳤다.

또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개인 유세장은 물론 정당 연설회장 등에 장애인 유권자를 배려해 통역사를 배치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대해 장애인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전혀 배려를 해 주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들은 후보자 선택의 기준이 없어 답답할 뿐"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대전지역의 한 후보자는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점자형 홍보물을 제작하려면 적어도 30만원 이상의 자금이 들어 빠듯한 선거운동 자금 사정상 제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국민일보 2000. 4. 4)

○ 주유소 화장실도 편의시설 애써 외면

서울지역 7백24개 주유소 화장실중 장애인시설을 갖춘 곳은 단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서울시가 지난달 7일부터 14일까지 시 공무원 30명을 통해 서울 전역 주유소 화장실의 서비스 수준 실태를 점검한 결과 밝혀졌다.

서울시는 서비스 수준 실태 조사를 위해 안내판, 남 · 녀구분, 관리인 지정 등 일반 점검항목 100점과 장애인용 시설, 온수공급, 유아용 시설 비치 등 가점 항목 30점을 합한 점수로 화장실을 평가한 결과 전체 평균 76.4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점수는 수우미양가중 끝에서 두

번째인 양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수준미달로 나타났다.

이중 특히 가점사항인 장애인시설 등 노약자시설은 총 7백24개소중 14개소에 불과해 정유회사들이 점차 늘어나는 장애인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주유소별로 가장 좋은 화장실은 1위가 오일플러스(1백13점, SK강남), 2위 대성제 6(1백10점, LG 동대문), 3위 SK가(1백8점 SK 금천) 순으로 나타났다.(장애인복지신문 2000. 4. 17)

○ 장애인 선관위 고소..."투표장 시설미비로 투표포기"

지난 4.13 총선에서 투표장 시설이 불편해 투표를 포기한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들이 관할 선관위를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1급 지체장애인 서승연(36.여)씨와 '한국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편의시설 촉진 시민연대'는 27일 오전 지난 4.13 총선에서 장애인을 위한 투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투표를 포기토록 한 경기도 광주군 선관위를 성남지청에 장애인 복지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서씨는 4월13일 투표를 하기위해 휠체어를 타고 광주군 투표장을 찾았으나 투표장이 23개의 계단을 올라가야하는 2층에 설치돼 있는데다 투표장에 도우미가 없어 투표를 포기했다. 서씨는 투표장의 선거 관계자들에게 휠체어를 들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내년에 투표하면 되지않느냐,투표소를 들판에 설치해야겠네"등의 말을 듣고 투표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으며 동행했던 서씨의 부모, 여동생도 투표를 포기한데 이어 소식을 전해 들은 남편과 또다른 여동생마저 투표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서씨는 "지금까지 수차례 선거를 경험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투표장이 3층이었는데도 선거관계자의 등에 업혀 올라가 한표를 행사하기도 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인권침해를 느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23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선거권행사의 편의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 광주 선관위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조선일보 2000. 4. 27)

○ [대구] 관공서 장애인 편의시설 '엉망'

대구지역 대다수 관공서가 법적으로 규정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

로 드러났다.

10일 '장애인 인권찾기회'에 따르면 최근 회원 24명이 대구지역 28개 관공서와 장애인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 관공서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했더라도 규정에 맞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당수 관공서가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시내 횡단보도의 경우 인도턱 낮춤과 점자블록이 설치된 곳은 전체 조사 대상지역의 30%,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곳은 10%에 불과했다.

남구지역은 조사대상 횡단보도 신호등 8개 가운데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곳은 1곳에 불과했고 남구청의 경우 승강기가 없고 계단 손잡이에 점자표지와 화장실 점형 유도블록이 없었으며 장애인 주차장도 규격에 맞지 않았다.

중구지역도 조사대상 횡단보도 8곳 가운데 점자블록은 4곳,음향신호기는 5곳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중앙도서관의 경우 승강기를 설치해 놓고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점자표지판은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청의 경우 화장실 폭과 규격이 맞지 않았고 장애인 주차장 너비도 규격에 훨씬 미치지 못했으며 중구청은 승강기 입구에 점자 표시는 물론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북구지역은 북부경찰서 등 5개 관공서가 출입구 접근로에 경사로 손잡이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동구지역도 조사 대상 횡단보도 신호등 7개 모두 음향신호기가 없고 동부경찰서의 경우 여자화장실 편의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 (국민일보 2000. 5. 10)

○ 투표 못한 장애인 국가상대 소송

참여연대와 뇌성마비연구회 바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편의시설촉진 시민연대 등 4개 단체는 7일 지난 16대 총선에서 투표소가 2층에 설치돼 투표를 포기한 1급 지체장애인 서승연(32)씨 등 장애인 8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모두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서씨 등은 소장에서 "지난 4.13 선거일에 투표소가 가파른 계단위 2층에 설치돼 있어 선관위 측에 도움을 청하려 했으나 선관위 직원들의 비협조로 투표를 포기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4.13총선 당시 1층이외의 장소에 투표소가 설치된 비율이 서울의 경우 23%, 전국적으로는 17%에 달했으며 전국 1만 3780개 투표소중 승강기나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곳은 62개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2000. 6. 7)

○ 강원도내 장애인 전용주차장 '있으나 마나'

강원 강릉시의 강원장애인연맹은 지난달 6일부터 보름간 강릉지역 공공시설과 대중 밀집시설 129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장 실태와 출입구를 조사한 결과 불편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강릉시청은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일반 민원인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고 출입구 앞까지 차량이 주차해 있어 휠체어가 드나들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구정면사무소는 도로 건너편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등 8개소의 장애인 주차장이 출입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강릉실내체육관 등 11개소는 관리소홀로 장애인 주차장 바닥면 표시가 지워져 있으며 주문진우체국 등 대부분의 우체국은 장애인용 출입구가 급경사이거나 직각형태로 돼 있어 휠체어 출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2000. 6. 13)

○ 국내 최대 쇼핑공간 코엑스몰 편의시설 부족해

지난달 3일 개장한 삼성동 소재 무역센터 부대시설인 코엑스몰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화장실이 쇼핑공간과 같이 있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으며 경사로는 휠체어로 올라가기 어렵다.

지난 10일 장애인 편의시설 일일체험으로 코엑스몰에 다녀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전용화장실이 남녀 공용이라는 점과 승강기 찾기가 힘들었다"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점자촉지도가 설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연구개발실 김인순 연구원은 "얼마 전에 점검을 나가보니 수족관 안에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는 제조업체의 프로그램 잘못으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도중 다시 1층에서 누르면 내려가는 현상이 있었지만 재조정 됐고 내부발판과 외부층과의 수평이 맞지 않아 수평이 되게 조정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엑스몰의 관계자는 "편의시설 중 경사로가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중간중간 안내도우미들이 배치 돼 장애인들이 쇼핑하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코엑스몰은 국내 최대 지하 쇼핑 공간으로 복합영화관, 수족관, 영패션플라자등 각종 쇼핑 및 레저시설이 들어서 있다.(장애인복지신문 2000. 6. 29)

○ 공단산하 직업학교 비상구가 '계단' 이라니…

장애인을 위해 지어진 시설에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애인

시설 건설에 따른 필수기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감사원에서 실시한 '공사 비전문 기관 시행 건설공사 집행 실태' 감사에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 전남, 대전직업학교 등이 설계 시공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공단에서 추진중인 이들 직업학교가 설계단계 또는 준공상태에서 일부는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직업학교 중 대전직업학교의 경우 통로바닥의 표면을 미끄러지기 쉬운 화강석으로 갈기로 했고 세 학교 모두 경사로에 설치되어야 할 참은 1.5평방미터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거나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장실 출입문은 휠체어가 출입하기에 부적절하게 되어 있으며 이동을 위한 경사로와 조깅트랙도 의무기준에 못 미치게 설계되거나 시공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직업학교가 의무항목은 아니지만 장애인들만을 위한 시설임에도 전남직업학교와 대전직업학교의 경우는 화재발생등의 비상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미끄럼틀식 통로가 아닌 일반계단으로 되어 있으며 생활관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등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등이 재난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이들 직업학교는 설계 심사시 담당직원, 담당교사 등만으로 형식적으로 설계를 심사한 것으로 알려져 감사원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건립할 경우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계심사위원을 구성하고 법률에서 지정하는 의무사항외의 필수기준안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3국 2과 권진성 과장은 "직업학교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최소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함에도 국가가 법으로 규정한 의무사항도 지키지 못했다"며 "법률에서 지정하는 의무항목은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에 한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욕구를 전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만큼 공단처럼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은 나름대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시설 설치를 위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감사결과 드러난 개선되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결과에 따라 공단에 편의시설과 관련된 의무항목은 반드시 지키고 기타 항목도 설치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장애인복지신문 2000. 7. 31)

○ "화장실 없어 휴가도 갈 수 없다니" 개탄

〔천안=최재철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천안시 거주 장애인들의 레저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근교 피서지가 없어 당일 나들이도 못하는 가운데 집에서 찜통 더위를 보내게 됐다.

천안시의 근교 피서지로 선호되는 광덕산 계곡과 태조산공원에는 장애인전용 화장실은 물론 수직 손잡이가 설치된 소변화장실도 갖추어지지 않았고 용연저수지 화장실은 관리가 귀찮다는 이유로 면사무소에서 폐쇄해 놓아 많은 시민들이 인근 상가 화장실을 대신 이용하고 있으며 결국 장애인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소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또 이 유원지와 공원은 물론 다른 근교 피서지도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는 턱이 높은 연석으로 공간이 구분되어 있거나 이동유도시설인 곡선램프와 점자블럭이 설치된 데는 한 군데도 없어 편의시설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근교 공원, 유원지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형식상 한 두면 설치된 전용주차장마저도 법정규격에 미치지 못해 휠체어로 이동하는 장애인들의 주차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더욱이 최근 시에서 시민의 주차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삼거리공원주차장을 크게 신설하면서도 장애인전용주차장은 단 한 면도 설치하지 않아 지역장애인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또 이 유원지와 공원의 공중전화부스는 매점 인근 한군데에만 설치되어 있고 턱이 높거나 폭이 좁았을 뿐만 아니라 휠체어에 앉은 자세에서는 손이 닿지 않을 정도로 전화기가 높게 설치돼 장애인들의 이용을 가로막았다. 특히 삼거리, 태조산공원의 연못과 용연저수지 물가 산책로에는 낙하방지용 레일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물론 접근을 경고하는 안내팻말마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익사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목천면사무소 한 관계자는 "용연저수지 화장실은 시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폐쇄했다"며 "공원이나 유원지 시설은 시 업무이지 면사무소 일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성정동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임아무개씨(44)는 "사설도 아닌 공설공원이나 유원지만이라도 최소한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며 "화장실 갈일이 생기면 놀다가도 급히 집으로 와야 한다"고 푸념했다. (장애인복지신문 2000. 7. 31)

○ 시각장애인 방송접근권 문제 처음 제기

눈밭에서 올리버와 제니가 눈밭을 구르고 있다. 얼굴 가득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서로에게 눈도 던지고 맞은 눈을 먹기도 한다. 이 사이로 눈밭에서 테마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내린다.

영화 '러브스토리' 하면 누구나 한번씩은 떠올리는 너무나도 인상적인 장면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영화를 보는 시각장애인들은 한참 영화속에서 나오던 주인공들이 갑자기 뭘하고 있는지, 왜 웃고 있는지, 어떤 배경속에서 연기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지난 15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최한 '시각장애인 방송접근 확대를 위한 세미나'에서 주제발제를 한 서인환 연구기획실장은 "시각장애인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공언했다. 이미 미국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음성화면해설서비스(DVS-Descriptive Video Service)가 바로 그것인데 영화 대사 또는 기타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침범하지 않고 중요한 시각적 요소에 대한 해설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이 제공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을 위해 액션, 배경, 바디랭귀지, 그래픽과 같은 내용을 더빙해 송출하는 이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인이 자막을 읽기 위해 디코더가 필요하듯이 SAP(Second Audio Program)를 갖춘 스테레오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수신기 등이 있어야 한다.

서인환 실장은 "최근들어 텔레비전이 프로그램 내용을 자막처리 하는 경향이 많으며 긴급속보등도 자막으로 제시돼 시각장애인들이 타인의 도움없이 정보를 얻는 데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며 "국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우선 녹화방송 드라마 등을 시각장애인 기관에 의뢰해 화면 해설을 첨가한 후 방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실장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올해 말까지 화면해설 편집기와 수신기의 제작을 희망하는 업체를 자문하고 연말까지 제품을 생산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후 자막 번역 영화에서 드라마, 오락물로 확대해 나가고 방송된 프로는 녹화해 시각장애인 비디오 도서관을 통해 대출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복지신문 2000.7.31)

○ 인사동 '점자블록' 저시력장애인 구분 어려워

현재 인사동에서는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검은색 블록에 점자유도블록도 같은 까만색이라서 의아했다. 공사를 담당하는 서울시청 문화과와 종로구청 토목과에 문의했더니 인사동 역사문화탐방로의 고풍스런 미관을 고려한 조치라고 한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저시력장애인(약시)들에게는 도움이 안된다.

시각장애인들과 달리 촉각이 발달하지 않은 저시력장애인은 색깔을 구분할 수 있어 가장 눈에 잘 띄는 노랑색으로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곳에서는 눈비가 오면 미끄러질 우려가 있고 색깔 구분이 잘 안되는 스테인리스 점자블록을 설치한 곳도 있어 점자블록의 색깔 및 재질에 대한 통일된 법규정이 시급하다. // 독자—박종태 · 경기 안산시 선부1동 (한국일보 2000. 8. 25)

○ [국감단신]지하철 장애인 편의시설 절대부족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국철과 전철,지하철 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3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순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으로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역사는 311곳 가운데 174곳(55.9%)에 불과했다.

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경우는 311개 역사중 20개 역사(6.4%)에만 설치돼 있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으로 바깥출입이 쉽지않은 현실을 감안, 서울과 수도권 교통수단의 핵인 지하철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2000. 10. 3)

○ 공공시설 편의시설 설치율 75% 불과

부산지역 공공시설내 편의시설 설치율이 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최근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4월 10일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한 공공시설 3783개소를 대상으로 점자블록과 턱낮추기 등 편의시설 정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75.8%인 8528개만 설치됐다고 밝혔다.

유형별 설치율은 장애인특수학교가 53.1%로 가장 낮았고 공중화장실과 공공도서관도 각각 59.5%와 59.8%에 불과했다. 시청과 구 · 군청 청사, 경찰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읍 · 면 · 동사무소의 설치율은 각각 77.7%와 75.9%로 나타났다.

용도별 설치율은 유도안내설비가 54%로 가장 낮았고 경보 · 피난설비와 화장실 대변기도 각각 57%에 그쳤으며 구 · 군별로는 영도구가 64.6%로 가장 낮았고 중구가 92.8%로 최고의 설치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자치단체장들에게 내년 4월 10일까지 미정비 대상 시설 2758개에 편의시설을 완료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장애인신문 2000. 10. 9)

■ 노동현장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

○ 정신지체인 임금 체불하고 위장 폐업 의혹

〔대구=김명희 기자〕 대구지역의 자동차부품업체인 (주)광진(대구 달서구 월성동 1405-5)이 회사에 고용된 정신지체장애인 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채 일방적으로 폐업하자 장애

인 부모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광진(대표 김동식)은 정신지체장애인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천2백32만원을 체불한 채 지난해 6월 폐업했다가 9월8일 부인 이정희씨 명의로 같은 자리에서 동일업종의 (주)광진전장을 설립해 의도적으로 장애인들의 인건비를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금체불 장애인 부모들은 지난 3월16일 회사 대표 명의의 '체불금품확인서'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를 토대로 대구법률구조공단에 민사소송을 의뢰했다.

그러나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회사법인이 폐업으로 이미 사라진 상태라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채무를 이행할 책임자가 없어 법인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인 명의의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듣고 실제 회사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재춘씨로부터 "오는 17일까지 4백50만원 상당의 임금을 우선 지불하고, 퇴직금 지불시기도 중순경에 알려주겠다"는 각서를 받아놓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 사건의 대리민사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법률구조공단 황현철 사건계장은 "법인이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법인을 통해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부모들이 개인 명의의 지불확인서를 받아놓은 만큼 지불약속이 안 지켜질 경우 개인에 대한 재산사항을 조사해 강재경매를 신청하는등 합법적인 매각을 통해 지불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광진은 아이엠에프 이전에는 장애인을 17명까지 고용하기도 했으며, 이를 빌미로 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총 1천2백여만원의 고용지원금을 받은 바 있다.

고용촉진공단 대구사무소 최봉규 대리는 "(주)광진이 서류나 임금대장등 고용관리가 잘 안되는 업체로 판단돼 현장심사를 한 바 있고, 고용지원금을 과다하게 신청했음이 드러나 '최저임금 이상 지급여부'와 '계속근로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일부만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실제 고용승계된 일부 장애인을 (주)광진전장에 신규채용된 것처럼 보고하는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업체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장애인복지신문 2000. 4. 16)

○ 노동계 '과잉 공권력' 규탄 확산

단위사업장 파업에 공권력이 연이어 투입되자 노총과 재야단체들이 대정부 투쟁을 선언해 공권력과 노동계가 정면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연합과 민주노총 등 사회노동 단체들은 3일 오후 서울 사직공원에서 '공안탄압 규탄을 위한 민중연대 결의집회'를 갖고 정부의 노조 탄압에 대해 대통령 사과,이무영 경찰청장 경질,피해자 보상 등을 요구했다.

전국연합은 지난달 28일 평택시장을 면담하러가던 에바다 장애인 40여명을 경찰이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1명이 갈비뼈 4대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고 공개했다. 또 부산에서는 해운대구청에서 농성중인 노점상 150명을 경찰이 해산시키면서 노점상 하모씨를 구타,하씨가 뇌출혈을 일으켜 입원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5일에는 민노총 전농 전노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앞으로 투쟁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노총은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하기 위해 3일부터 지역별 규탄 집회를 갖고 6일에는 서울 종묘공원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갖기로 했다. 또 5일에는 경찰청을 항의방문하고 8일 전국동시다발 집회도 가질 예정이다.

의료보험관리공단 노조도 전국 10개 지부별로 매일 상경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경찰청장과 관리공단이사장의 즉각퇴진을 요구했다.(국민일보 2000. 7. 3)

○ 29살 장애인 취업거부 당하자 자살

『내 아들은 이 사회가 죽인 겁니다.』

3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전농2동 성바오로 병원 영안실에 마련된 이헌규(29)씨의 빈소를 지키고 있던 이씨의 가족 10여명은 이렇게 말하며 오열했다.

소아마비와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인 이씨는 30일 오후 10시쯤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평역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상태로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지하철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었다.

이씨의 가족들은 『헌규가 최근 면접까지 통과해 곧 취직한다고 좋아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첫 출근 때 입고 나갈 깨끗한 정장과 구두를 새로 장만하기도 했다. 하지만 왼손만 겨우 쓸 수 있는 이씨는 결국 출근할 수 없었다. 이씨는 회사로부터 『약간 곤란할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고, 가족들은 이씨에게 『왜 출근 않느냐』고 차마 물어보지 못했다.

자살하기 며칠 전 이씨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 못난 형을 대신해 부모님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상하게 생각한 동생이 청주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해, 가족들이 급히 상경했으나 이씨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몸이 불편한 게 무슨 큰 죄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씨 어머니는 울부짖었다.

어려서 뇌성마비와 소아마비를 앓은 이씨는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받지 못했다. 80년부터 87년까지 이씨가 다녔던 연세대 재활학교 박숙자(54) 교장은 『몸은 불편했지만 아주 똑똑한 아이였고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다. 이씨는 장애 극복 의지와 삶에 대한 열정이 큰 학생이었다. 박교장은 『이씨는 현재 재활학교 동문회장을 맡고 있고, 매년 스승의 날이면 꽃을 들고 찾아올 정도로 적극적인 아이였다』고 말했다.

이씨 가족들은 『헌규가 컴퓨터 실력이 뛰어난데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취직에 실패

하는 현실 앞에 절망했었다』며 『장애인이 살기에는 지옥보다 못한 사회가 헌규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0. 8. 31)

○ 시각장애 교수 권고퇴직 장애우권익硏"법적대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공주영상정보대학(학장 이진)이 시각 장애를 이유로 공주영상정보대학 이광만(41 · 사이버오피스학과) 교수에게 권고퇴직을 강요한 것은 부당하다며 복직을 요구했다.

연구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8년 동안 재직하면서 강의를 무리없이 소화해내온 이교수가 지난 8월 18일 시각장애를 이유로 퇴직당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때문"이라며 "학교측은 이교수가 다시 강단에 설 수 있도록 복직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연구소측은 또 "이는 헌법과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교수의 복직을 위해 권고사직 무효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망막색소변성증(시각장애 3급)을 가진 이교수는 기자회견에서 "8월 18일 학장으로부터 '자진해서 사직서를 내라' 는 말을 들었고, 학교측의 강요로 결국 명예퇴직원에 사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2000. 10. 10)

■ 소비자로서의 장애인 차별

○ 보험가입도 장애인 차별

다리 전다고 암보험 거절...가입해도 일반인보다 비싸.

장애인들이 보험가입을 거절당하고 있다. 많은 보험회사들이 보험종류에 따라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허용하지 않는가 하면, 보험가입을 허용해도 일반인보다 크게 높은 보험료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장애인들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전 재산을 날려야 하는 경우에 종종 처한다.

올 3월 초 전북 전주 C장애인학교에 교사로 부임한 이영재(이영재 · 37)씨는 삼성생명이 신임 교직원에게 판매중인 「직장인 플러스 보장보험」에 가입하려 했지만 언어청각장애인이란 이유로 거절당했다. 언어청각장애인 2급인 그는 『교사에 임용될 정도로 말을 하고, 자동차 경적소리도 구별할 수 있다』고 항변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경기도 시흥공단에서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신성산업은 작년 8월 직원 40여명을 삼성생명 「직장인 세이프 단체보험」에 가입시켜 주었다. 하지만 언어청각장애 2급과 3급인 여직원 두 명은

끝내 거부당했다. 삼성생명 본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장애인의 보험가입 자체를 막지는 않고 있다』며 『담당직원의 업무착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왼쪽 다리를 저는 이모(30 · 서울 서초동)씨는 작년 말 농협의 암보험 상품에 들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다리를 전다고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도 아니잖느냐』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장애인들은 보험에 가입해도 일반인보다 많은 보험료를 물고 있다. 작년 8월 미국을 여행한 시각장애인 이모(53 · 서울 대치동)씨는 여행자보험료를 두 배 많이 냈다. 그러면서 이씨는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가급적 건물 밖에 나가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조문순(조문순 · 30) 팀장은 『생명보험의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돼 있지만,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가입을 거절당하고 있다』며 『사례를 모아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장애인의 보험가입이 차별받지 않으며, 미국의 경우 장애인을 차별하면 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차별금지 조항이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다. (조선일보 2000. 4. 19)

○ 장애인 보험차별 집단소송 제기

전북 S특수학교 교사인 李모(38.2급 청각장애인)씨는 최근 신규교원 종합보험을 계약하려다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

이달 초 학교를 방문한 A생명 생활설계사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했는데 별안간 보험사측이 "장애인은 가입자격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해왔다.

다른 보험사들에도 신청했지만 단지 장애인이란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다. 李씨는 "청각장애인은 보험가입이 안된다는 규정은 약관 어디에도 없었다" 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중 보험회사들이 실증적 자료도 없이 각종 방법으로 장애인을 차별대우해 원성을 사고 있다. 가입 문턱을 턱없이 높이거나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보상액조차 일반인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10대 보험사 중 생명보험은 7곳, 건강보험은 3곳 정도가 '재해나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 는 이유로 장애인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소 趙문순 간사는 "영리추구에만 집착하는 보험회사들이 내부지침을 통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측은 차별사례 40여건을 토대로 장애인 원고인단을 모집, 다음달 중 해당 보험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吳도영 팀장은 "장애인복지법 제8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

을 받지 않는다' 고 명시하고 있지만 보험분야의 차별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회원단체들과 연계해 보험감독원 등에 정책적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들은 "비록 실증적 근거자료는 없지만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장애인의 사고.질병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정상인과 똑같은 보험료 적용은 무리가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험감독원 관계자는 "외국처럼 위험산출기법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에서 보험사들에 형평성만을 강요하긴 힘들다"며 "대신 장애인 상품 등을 적극 개발토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2000. 4. 20)

■ 기타

○ 〔인권찾기 캠페인〕 작은 인권침해부터 바로잡아야

21세기를 맞은 우리나라는 이제는 인권선진국이 될 것인가.

반독재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인권후진국에서 「인권국가군(群)」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과연 하루하루를 「사람답게」살고 있는 지에 대해선 고개를 저을 수 밖에 없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마저 「사람답게」살 권리를 빼앗기고도 이를 알지도 못한 채 순응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과거 국가안보, 경제성장 등의 명분으로 유린됐던 인권은 지난 2년간 「IMF 관리체제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짓눌렀다. 사회적 경쟁에서 패배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자군과 그 가족이 사람다운 삶의 권리를 포기해 왔다.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큰 피해를 입었다. 결식아동은 IMF 사태 다음해인 1998년 13만 9,280명으로 전해에 비해 50%이상 늘어났고, 1999년에는 15만 3,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변화에 적응하느라 급급한 나머지, 우리는 장애인들을 사회 안에 보듬는 대신 그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특수시설에 몰아넣고 있다. 철거민촌에서는 60 · 70년대 개발독재시대와 똑같은 광경이 오늘날도 되풀이되고 있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럴싸한 법 규정과 제도를 수사기관의 일선 관계자들은 따르지 않고 있다. 대한변호사 협회는 지난해 28일 발간한 1998년도 인권보고서에서 『국민의 정부 출범후에도 경찰직무집행법의 관련규정이 준수되지 않아 불법적인 불심검문 및 임의동행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도 피의자에게 변호인 접견을 허용하지 않은 채 신문조서가 작성되는 등 수시로 침해되고 있다.

과거조차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보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인권문제도 대두했다. 전자식 주민등록카드의 보급은 프라이버시권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또 컴퓨터에 덜 능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컴맹」이라는 조소를 받으며 각종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특히 정보를 가진자와 갖지 못한자간의 불평등 등 「정보민주주의」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국일보는 인권실천시민연대와 함께 3일부터 연중 시리즈 「사람을 사람답게」캠페인을 시작한다. 이 캠페인은 너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우리의 인권을 스스로 찾아나서는 긴 여정(旅程)이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처럼 사람답게 살기 위해선 권리를 자각하고, 또 남에게도 똑같은 권리를 인정하는 길 밖에는 없다.

서강대 김 녕(金 寧 · 정치학)교수는 『인권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나 양심수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개개인이 직면하는 문제』라면서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사소한 문제라도 나와 또 남의 존엄성과 자유를 억누르는 한 결코 간과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창익(吳昌益) 인권실천 시민연대 사무국장은 『21세기의 인권문제는 사람들이 왜 차도를 놔두고 지하도로 내려가거나 육교로 올라가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2000년은 한국인권운동의 원년』이라고 강조했다./ 유승우 기자 swyoo@hk.

관련기사

〔학대받는 아이들〕 "우리 아빠는 저를 망치로 때려요…"

한국일보 · 인권실천 시민연대 인권찾기 캠페인 자문위원 명단(가나다순)

▲곽노현(郭魯鉉)방송대 법학과 교수(민교협 대표, 국가인권위 공동추진위 집행위원장)

▲김 녕(金 寧)서강대 교수(정치학)

▲박원순(朴元淳)참여연대 사무처장, 변호사

▲이덕우(李德雨)변호사

▲이유정변호사(여성문제)

▲한인섭(韓仁燮)서울대 법대교수 (한국일보 2000.1.3)

○ 〔사람을 사람답게〕"사회로부터 '왕따'가 가장 슬퍼요"

장애인에 대한 가장 큰 차별은 우리 사회로부터 그들을 분리해내는 것이다. 신체기능이나 사회적 적응력이 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장애인을 직장과 학교, 심지어 가정으로부터 솎아내 다른 먼 곳으로 내몰고 있다.

선천성 뇌성마비인 K(33 · 여)씨는 6남매중 다섯째로 태어나 30여년간 가족들에게 모진 설움을 받았다. K씨는 특수학교는커녕 초등학교 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집안에 내버려졌다. 막노동

과 파출부 일을 하는 K씨의 부모는 『너 때문에 집안에 재수가 없다』고 욕설을 퍼부었고 형제들도 대화조차 피하며 그녀를 잊고 지냈다. 화가가 꿈인 정신지체장애인 L(15)양은 올해 경북 P예술고에 진학하려다 퇴짜를 맞았다. 최근 장애인 입학을 거부해 물의를 빚은 서울교대 등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 대부분은 L양처럼 입학서류조차 접수하지 못한다.

우리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 총인구수의 10~20%가 장애인이라는 유엔의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수는 400만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말 현재 정부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75만 3,451명에 불과하다. 우리 주위에선 그만큼도 장애인이 눈에 띄지 않는 데 이는 장애인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숨기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을 위한다는 특수시설들도 「우리」 곁에 있지 않고 대부분 먼 산속에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에관한 법률 등 제도의 지원의 받아 겨우 「세상」속에 비집고 들어와도 얼마밖에 버티지 못한다.

96년 인테리어업체에 취업한 J(28 · 여 · 소아마비)씨는 매일 무리한 야근과 장애인 시설부재로 고통받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할 수 없다. 고용주는 장애인 편의시설 정부보조금 1,000만원만 챙기고 『필요 없으니 나가라』고 호통을 친다. J씨는 『정부는 확인 한번 안했다』며 『보조금 몇푼으로만 장애인대책 운운하지 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이 제출한 국회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6년부터 공단이 기업에 취업시킨 9,646명 가운데 2년반 뒤인 98년 6월만 현재 37%인 3,665명만이 근무하고 나머지는 퇴직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대형 유통업체에서 장애인여성 18명 채용계획을 발표했지만 기준이 전문대졸업 이상이어서 1명도 추천하지 못했다』며 『장애인여성의 80~90%가 중 · 고졸인 상황에서 이러한 취업기준은 사실상 장애인을 뽑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어렵게 대학을 졸업한 청각장애인 K(28)군은 『4년간 사제(師弟)나 친구지간의 정을 느끼지 못하고 항상 주변인으로 맴돌았다』며 『따돌림을 받을 때마다 스스로가 저주스럽다』고 말했다. 맹인 안내견에 의지하고 있는 K(23)씨는 『식당과 극장, 백화점 등 가는 곳마다 쫓겨나기 일쑤』라며 『동년배들 틈에서 그들과 똑같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게 장애인을 돕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 장애인 대책 - '자선' 보다 '사회참여' 에 초점을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일반 인식의 전환이다. 정부에 장애인 전담부서가 설치된 지 10년이 넘고, 시민 · 사회단체와 언론이 「장애인 먼저」를 외치고 있지만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다.

서울대법대 3학년때 소아마비에 걸려 두 다리를 못쓰는 1급 장애인 송영욱(宋永旭 · 63)변호사는 『서양은 인권사상의 발전으로 장애인 인권이 존중받는 반면 우리나라는 강자의 힘의 논리가 지배, 약자에 대한 배려가 대부분 동정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풍조도 문제. 장애인 시설이 주변에 들어서려고 하면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외친다. 집값이나 땅값하락이 주된 이유다. 송변호사는 『장애는 개인의 잘못이기 보다는 질병 사고 전쟁 등 어쩔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비장애인도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 「예비장애인」이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97년 9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장애인복지대회장을 맡기도 했던 송변호사는 ▲장애인 이용시설의 확충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및 평등의식 제고 등이 선행조건이라고 말했다. 즉 피동적 개념인 「수용」 대신 「이용」 시설을 늘려야하고, 장애인 스스로 사회발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지를 키워주는 일이 정부와 일반인들의 몫이라는 설명이다.(한국일보 2000. 2. 21)

○ 청각장애인 헌혈 거부에 장애계 반발

청각언어장애인이 채혈금지대상자로 헌혈을 거부당하자 인권침해라며 장애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제주도에 거주하는 두 여성 청각장애인들이 수화통역사와 함께 헌혈을 하기 위해 모 혈액원을 방문했으나 청각언어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헌혈을 거부당했다. 또 지난해 4월 장애인의 날 행사때 단체 헌혈을 추진한 제주도농아인협회도 외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장애계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라며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혈액관리법 7조 및 시행규칙 7조에 의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자로 심신상실자를 규정해놓고 있으며 의사의 진단에 의해 건강상태가 불량하거나 채혈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금지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대한적십자사는 내부지침(채혈판정표)에서 헌혈부작용시 의사소통의 장애 등을 고려해 청각장애인을 영구배제시킨다고 규정했으며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도 건강상태가 양호한 맹인은 채혈가능하다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 인권센터는 이와 관련해 "수화통역을 통해 얼마든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필답이 가능한데도 원천적으로 헌혈을 못하게 한 것는 자기결정권 침해이며 대화가 안될 것이라는 이유 역시 청각언어장애인의 판단능력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헌혈부작용은 일반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간호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니만큼 청각장애인이 영구히 헌혈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와 대한 적십자사에 제출했다.

또 '건강상태가 양호한 맹인은 채혈가능하다' 고 한 규정은 평상시 시각장애인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모든 헌혈자에 적용되어야 할 기준을 특별히 시각장애인에게 규정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농아인협회(회장 안세준)는 또 "청각장애인의 헌혈에 대한 제한은 정부의 인식과 이해 부족의 원인"이라며 헌혈관리법 시행규칙의 채혈금지대상자에 규정된 심신상실자를 삭제하고 내부지침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영구배제조항을 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과의 이미정씨는 이에 대해 "청각장애인이 심신상실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헌혈 자체가 수혈자 및 헌혈자의 건강을 위한 것이므로 현행 지침상에 의사소통 문제로 영구배제한다고 규정한 것"이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혈액관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헌혈자 문진지침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보건자원정책과의 송민석 사무관은 "'심신상실자'라 함은 민법 · 형법상 자발적인 의사능력이 없는 자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과는 별개의 의미이며 기존 '심신장애자'라는 용어는 이미 '장애인'으로 바뀌었다"며 "헌혈을 하겠다, 안하겠다는 스스로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지 장애인이어서 제외된다는 지침은 비인도적이라 여겨 해석상의 문제에 대해 대한적십자사에 정식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애복지21 2000. 3. 20)

○ 또 장애인 비하발언 물의

〔대구=김명희 기자〕 대구 북구을에 출마한 한나라당 안택수 후보가 2일 합동연설회에서 타 후보로부터 병역의혹을 제기받자 "제2국민역은 병신들"이라고 응수해 지역 장애인계가 항의와 함께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북구을은 6명의 후보 중 3명이 현역으로 가지 않아 특히 병역공방이 가장 치열했다.

이에 대해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안후보측에 공식사과를 요구했으며 안후보측은 "이번 발언은 일반 장애인을 지칭한 말은 전혀 아니었다"며 "'병신'이란 어휘를 사용한데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서면 답변했다 (장애인복지신문 2000. 4. 16)

○ 치과마저 목발 문전박대

지난 봄이었다. 치통으로 시달리다 집 근처 치과에 갔다. 내 차례가 돼 진료실로 들어가려고 하니 간호사가 목발을 놓고 들어가라고 했다. 목발 없이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처지라 당황했다.

그러자 진료실에 있던 의사가 다음 사람을 먼저 들어오라고 했다. 내 차례인데 그럴 수가 없다며 그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간호사가 "오늘 아침 소독을 했기 때문에 금속성 물건은 지니고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금속성 목발이 치과를 오염시킨다는 얘기였다. 그러면 목발을 짚고 들어간 다음 진료를 받을 동안 대기실에 내다 놓으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그래도 안

된다고 했다.

화가 났다. 되돌아 나오면서 바로 이게 장애인 차별이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의학 지식이 부족해서인지는 몰라도 치과에 소독을 했을 경우 금속성이 닿으면 안 되는지 정말 알고 싶었다. 영국에서 병원에 갈 때가 생각났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었다. 단지 불편함에 대한 배려가 없었을 뿐이었다.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차별의 눈빛을 애써 무시해왔다. 그러면서 장애인이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살아왔다. 하지만 그 일은 내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시켜줬다. 나의 이런 경험이 다른 장애인한테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변형순/서울 노원구 상계5동) (한겨레 2000. 7. 14)

○ 따돌림받던 장애자 아들 엄마가 살해후 자수

『아들이 평생 장애인으로 살 고통을 견딜 수 없어 그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졌습니다.』

30일 새벽 서울 성북경찰서 1층 형사계 조사실. 아들을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자수한 이모(여 · 35)씨는 하염없이 눈물 흘렸다. 이씨의 아들 태영(7)군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유전병인 터너증후군 등을 앓아 왔다. 96년 수술까지 받았으나 발육은 부진했다.

올해 3월 초등학교에 입학했지만 같은 반 친구들은 태영이를 『송충이 같다』며 따돌렸다. 게다가 과잉행동장애를 앓는 태영이는 일주일에도 서너 차례 아무런 이유 없이 때를 썼다. 지난 29일에는 큰 길가에 주저앉아 생떼를 쓰고 욕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씨는 아들의 병이 점점 심해진다고 여기고 아들과 함께 죽을 것을 결심했다.

이날 새벽 3시쯤 이씨는 남편(40)이 잠든 사이 집 근처에 세워둔 남편 승용차에 아들을 데리고 가 스타킹 등으로 목을 졸랐다. 이씨는 경찰에서 "어차피 정상인으로 성장못할 바에야 죽는게 낫다고 생각했다"며 "나도 따라 죽으려 했지만 막내 아들(6)이 눈에 밟혀 차마 모진 맘을 먹지 못했다"고 말했다. 성북경찰서는 이날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선일보 2000. 10. 1)

인권헌장

세계인권선언

1948. 12. 10 국제연합 제5회 총회에서 채택

전 문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여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함은 세계에 있어서의 자유,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인권의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유린하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사람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는 모든 사람의 최고열망으로 선포되어 왔으므로 사람이 전제와 탄압에 대항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인권을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절대 긴요하므로, 제 국민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킴이 절대 긴요하므로 국제연합의 제 국민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인 인권과 인신의 존엄성과 가치와 남녀동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또한 보다 광대한 자유 안에서 사회를 향상시키고 일층 높은 생활수준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기로 결의한 바 있으므로, 가맹국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자유에 대한 세계적인 존경이념을 촉진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는 이 서약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이제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가 도달하여야 할 공통된 목표로서 이 인권선언을 발표하는 바이니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이 선언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경이념을 깊게 하도록 교육하며 국가적 또 국제적으로 점진적인 방법으로써 가맹국 자신의 인민들과 통치하에 있는 인민으로 하여금 이 권리와 자유를 보편적으로 충실히 인식하고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조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써 행동하여야 한다.

제2조

1. 모든 사람은 종족, 살색, 성별, 언론, 종교, 정치상 기타의견, 민족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가문 혹은 기타 지위여하로 인하여 하등의 차별을 받음이 없이 본 선언에 발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뿐만 아니라 각자의 속하여 있는 나라나 지역이 독립지역이거나 신탁통치지역이거나 비자치지역이거나 혹은 주권의 제한을 받는 지역이거나를 막론하고 그 정치상, 관할상 혹은 국제상 지위에 있어 하등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노예신분이나 노예상태하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에 있어서나를 막론하고 금지되어야 한다.

제5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고문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잔인하고 비인도적 혹은 비열한 처우나 처벌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디서나 법률 앞에 하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삶은 법률 앞에 동등하며 아무런 차별없이 동등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동등한 보호를 받으며 이러한 차별대우에 선동되지 않도록 동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혹은 법률이 부여한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관 국가 법정에서 유효한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체포, 감금 혹은 추방되지 아니한다.

제10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권리 의무 및 그에게 대한 범죄소송을 제정함에 있어 자주적이요 불편부당한 공개법정 앞에서 하등의 차별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 형법상 범죄로 인하여 소추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변호에 필요한 모든 보장이 확보되어 있는 공개재판에서 법에 의하여 유죄로 판명될 때까지는 무죄한 자로 간주될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행위의 당시 국내법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형법상의 유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행위의 당시 적용할 수 있는 형벌보다 중한 벌을 과하지 못한다.

제12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사, 가족, 가정 혹은 통신에 대하여 불법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명예와 신망에 대한 침해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국 내에서 이동하고 거주할 자유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나라(자국을 포함함)에서든지 떠날 수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 피난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 범죄나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소추인 경우에는 실효된다.

제15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를 막론하고 불법하게 그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국적변경의 권리가 거부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6조

1. 성년된 남녀는 종족, 국적 혹은 종교로 인한 하등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결혼하고 가정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성년의 남녀는 결혼기간 중 또는 그 해소에 있어 혼인에 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2. 결혼은 배우자가 될 의사를 가진 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되어야 한다.
3.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 기본적인 단위단체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불법하게 재산을 박탈당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혹은 신앙을 개변할 자유와 단독으로나 혹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나 또는 공적으로나 혹은 사적으로나 자기가 믿는 종교나 신앙을 전도하고 실천하여 예배하고 신봉할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이를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어떤 방도를 통하여서나 국경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정보와 사상을 탐구, 입수,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1. 누구를 막론하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를 막론하고 어떠한 결사에 가입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1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직접으로 혹은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나 자국에서 평등하게 공무에 취임할 권리를 가진다.
3. 인민의 의사가 정부권력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 의사는 평등한 보통선거에 의하며 또 비밀 혹은 그에 유사한 자유투표 방법에 의한 정기적인 정당한 선거로 표시되어야 한다.

제22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조를 통하여 또는 각 국가의 기구와 자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그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달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제권리를 실현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일할 권리와 직업의 자유선택과 적정, 유리한 노동조건과 실직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런 차별없이 동등한 일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일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공정 상당한 보수를 받으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 방법으로써 보충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각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적당한 노동시간의 제한과 유보수의 정기적 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를 가질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적 시설을 포함하여 자신 및 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함에 충분한 생활수준을 보유할 권리를 가지며 실직, 질병, 배우자의 상실, 노쇠 혹은 기타 불가항력의 사정으로 인하여 생활의 곤궁을 받을때에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성과 유약은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이동은 적출이고 아님을 막론하고 동일한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적어도 초등 및 기초기에 있어서는 무료이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본위로 누구나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을 완전히 개발시키고 인권과 기본 자유에 대한 존경이념을 견고히 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와 종족과 종교단체 사이에 이해와 관용성과 우의를 돈독히 하여야 하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의 사업을 조장시켜야 한다.
3. 부모는 그 자녀에게 과할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제27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관여하며 예술을 감상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제작한 과학상, 문학상 혹은 예술상 작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본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인격의 자유롭고 또 완전한 발달이 그 속에 있어서만 가능한 사회에 대하여 의무를 진다.
2. 이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십분 인정하고 존경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법률 또는 도덕, 공공질서 및 민주사회의 일반 안녕을 유지하는데 필요하고 정당한 요구에 응하여 제정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서만 제한을 받는다.
3. 이 권리 및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반되게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0조

본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바는 그 어느 규정을 막론하고 본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거나 혹은 그러한 목적을 가진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나 개인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 인권헌장

1998. 12. 9 선포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 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 경제 · 사회 · 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의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의 권리선언

UN총회 결의 3447(제30차) 1975. 12. 9 채택

1.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신체적 ·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2. 장애인은 본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를 누린다. 이들의 권리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혹은 기타의 의견, 국가 또는 사회적 신분, 빈부, 출생, 장애인 자신이나 그 가족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구별이나 차별 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인정된다.
3.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는 권리를 출생하면서부터 갖고 있다. 장애인은 그들 장애의 원인, 특질, 정도에 관계없이 같은 연령의 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이는 맨 먼저(First and foremost) 가능한 통상적이고 만족스러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4. 장애인은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 제7조는 정신지체인의 이와 같은 권리의 어떠한 제한이나 배제에도 적용된다.
5. 장애인은 가능한 한 그들이 자립(Self-reliant)할 수 있도록 계획된 여러 시책을 누릴 자격이 있다.
6. 장애인은 보장구를 포함한 의료적, 심리적, 기능적 치료와 의료적, 사회적 재활, 교육, 직업교육, 훈련 및 재활, 원조, 상담, 직업알선 및 기타 장애인의 능력과 기술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그들이 사회통합 또는 재통합의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7. 장애인은 경제적, 사회적 보장 및 상당한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그 능력에 따라 보장을 받고, 고용되어, 유익하고 생산적이며 보수를 받는 직업에 종사하고, 노동조합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경제 · 사회계획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그들의 특별한 요구가 고려되도록 할 자격이 있다.
9. 장애인은 그들 가족이나 위탁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모든 사회적, 창조적 활동이나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그의 주거와 관련하여, 그 상태로 인하여 그가 필요하다든지 혹은 그 주거상태개선을 요구할 경우 이외에는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만일 장애인이 특수한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할 때에도 그 곳의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동연령 사람의 통상적 생활과 가능한 유사한 것이라야 한다.
10. 장애인은 차별적, 모욕적 또는 천박한 모든 착취와 모든 규칙, 그리고 모든 취급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1. 장애인은 그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법적인 원조가 필요할 때에는 그러한 것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장애인에 대해 사법적인 소송절차가 있을 경우에, 그것에 적용되는 법적 수속은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2.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유효하게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13. 장애인과 그 가족 및 지역사회는 모든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본 선언에 포함된 권리에 대해 충분히 주지하여야 한다.

농아인 권리선언

세계농아연맹(WFD) 총회 1972. 8. 채택

UN은 세계인권선언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평화의 참다운 기초로서의 인권은 전세계를 통하여 양도할 수 없는 평등한 원리라고 선언하였으며, 세계농아인연맹(WFD)은 1972년 8월 제8차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제1조

농아인은 세계인권선언 및 아동의 권리선언,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UNESCO,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승인된 문서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된 것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조

청각장애 문제가 현대적 접근법으로 다루어져 농아인의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국내 및 국제적 수준에서 적절하고 긴급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편견의 결과로 인한 낡은 사고방식에 근거한 것이다.

제3조

농아인은 실제로 평등한 조건 아래서 다른 시민들과 같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상기 선언에 제시된 법률과 기타 조치들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 완전한 재활과 사회참여를 달성할 수 있도록 농아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1. 농아 청소년은 특별한 기준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와 다 전문적 조기진단, 특수학급, 무료보청기지급, 직업 및 교육과정의 자유로운 선택, 특수직업훈련 및 고등교육 등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2. 농아 아동대상 교육의 질과 우선 순위는 일반 공교육에 적용되는 것은 같은 수준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3. 지문자, 수화, 발화 및 독화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 소통할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교육 방법과 체계가 자유롭게 검증되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농아인의 복지에 헌신적인 부모와 연합회는 교육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1. 전체 지역사회는 농아연합회의 협조와 도움을 받아 농아인의 바램과 목적을 실현하고 그들이 권리와 의무면에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평등한 조건으로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들의 능력내에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이와 함께 그들은 각 지역사회의 사회 및 경제적 조건에 맞는 특수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6조

농아인은 청각이 꼭 필요하지 않은 1260종의 직업 중에서 선정된 적절한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개인적 만족의 토대가 된다.

제7조

특히 농아인은 반드시 지역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의사소통의 장벽을 제거하거나 보청기 착용을 통하여 가능하게 함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적절한 그림 및 시각보조기구의 사용, 영화나 TV프로그램에 자막삽입, 수화에 대한 낡은 교육적 낙인을 제거하고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등도 포함된다.

제8조

1. 청각손상을 가진 사람들이 적절한 재활사업에 의하여 도움을 받기 위하여 지역사회는 전국적 농아인 조직을 농아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도구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조직에서는 농아인의 모든 경험이 가족과 교육, 직업훈련, 지역사회생활, 평생교육, 여가시간활용 등의 문제로 집약된다.
2. 다른 도구나 수단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법적 명칭이 농아인 협회에 부여되어 농아인이 일하고 생활하는 지역사회에서 도덕적 그리고 물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들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그들의 경험과 재능을 사회에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

1. 지역사회는 적절한 도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역서비스와 시각보조기구와 제도, 보청기의 사용과 응용, 평생교육, 문화 그리고 직업교육, 치료, 진단을 위한 전문요원, 과학적인 전문요원들을 훈련하기 위한 특별한 학교나 시설을 설립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2. 이것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으로서 정부와 국가적인 기구는 과학적인 기술혁신과 정부, 기술의 상호교육을 동시에 준비하여야 한다.
3. 세계농아연맹이 국가적인 연합회와 연합하는 목적은 농아인을 위한 보호와 농아인 재활분야에서 세계적인 사업을 주도하는 전문가들과 농아인복지의 개발이 약속되고 협력이 제공되고 연구에 관계된 자문을 하고 연구와 프로그램 교류를 하는 것이다. 세계농아인연맹은 앞으로 농아인에 대한 국제적인 기관을 설립하는데 솔선하여 지도할 것을 약속한다.

정신지체인 권리선언

1971. 12. 20 UN총회

제1조

정신지체인은 국민으로서 일반 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제2조

정신지체인은 그 상태가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그의 능력과 가능성을 최대한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의학적 조치와 교육, 훈련, 재활 및 지도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

정신지체인은 안정된 경제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생산적이며 뜻있는 직업에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정신지체인은 가족들과 함께 살 권리가 있다. 또한 모든 사회생활에 참가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신지체인과 동거하는 가족 들은 부조를 받아야 한다. 만일 시설에서의 양호가 필요한 자라면 그 시설은 최대 한도로 가정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제5조

정신지체인은 자기의 개인적인 복지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자격있는 후견인을 가질 권리가 있다.

제6조

정신지체인은 착취와 남용과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만일 고소를 당한다면 그의 심신상의 책임능력을 충분히 인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야한다.

제7조

정신지체인이 중증으로 그 모든 권리를 유용하게 행사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그 권리의 일부나 전부가 제한되거나 배제되어야 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에 이에 적응하는 절차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인권지침서

발 행 일 : 2000년 11월

발 행 인 : 안 세 준

발 행 처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3(보이스카우트 빌딩 3층)

전화: 02)783-0067　전송: 02)783-0069

E-mail : hanjc21@chollian.net

homepage : http://www.kodaf.or.kr

인 쇄 처 : 브리지(2269-6946)